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5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4.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일

II . 제안사유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9,741,994	10,084,661	△342,667	△3.4
세 입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748,655	5,911,403	△162,748	△2.8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3,605,550	3,458,476	147,074	4.3
	기 타 이 전 수 입	8,967	9,899	△932	△9.4
	자 체 수 입	98,218	181,534	△83,316	△45.9
	지 방 교 육 채	0	0	0	-
	전 년 도 이 월 금	280,604	523,349	△242,745	△46.4
세 출	인 건 비	6,378,810	6,070,502	308,308	5.1
	기 관 운 영 비	30,023	29,757	266	0.9
	학 교 운 영 비	884,487	901,799	△17,312	△1.9
	교 육 사 업 비	1,873,607	2,067,774	△194,167	△9.4
	시 설 사 업 비	447,471	895,183	△447,712	△50.0
	지 방 교 육 채 및 B T L	117,531	109,646	7,885	7.2
	예 비 비	10,065	10,000	65	0.7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748,655	58.9	5,911,403	58.6	△162,748	△2.8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3,605,550	37.1	3,458,476	34.3	147,074	4.3
기 타 이 전 수 입	8,967	0.1	9,899	0.1	△932	△9.4
자 체 수 입	98,218	1.0	181,534	1.8	△83,316	△45.9
지 교 육 방 채	0	0.0	0	0.0	0	-
순 잉 세 여 계 금	280,604	2.9	523,349	5.2	△242,745	△46.4
합 계	9,741,994	100.0	10,084,661	100.0	△342,667	△3.4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 건 비	6,378,810	65.5	6,070,502	60.2	308,308	5.1
기 관 운 영 비	30,023	0.3	29,757	0.3	266	0.9
학 교 운 영 비	884,487	9.1	901,799	8.9	△17,312	△1.9
교 육 사 업 비	1,873,607	19.2	2,067,774	20.5	△194,167	△9.4
시 설 사 업 비	447,471	4.6	895,183	8.9	△447,712	△50.0
지 방 채 및 B T L 상 환	117,531	1.2	109,646	1.1	7,885	7.2
예 비 비 및 기 타	10,065	0.1	10,000	0.1	65	0.7
합 계	9,741,994	100	10,084,661	100	△342,667	△3.4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7,419억 9천 4백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6억 6천 1백만원 보다 3,426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1] 2017~2021년 예산(안)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액	8,147,725	9,151,267	9,380,315	10,084,661	9,741,994
전년대비 증감액	146,438	1,003,542	229,048	704,346	△342,667
증 감 율	1.8	12.3	2.5	7.5	△3.4

- 금번 예산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14조에¹⁾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전(全)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따라 증액교부금으로 1,76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의 법정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년 보다 1,470억 7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국세수입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원아수 감소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보다 1,627억 4천 8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수업료)의 감소로 자체수입도 전년 보다 833억 1천 6백만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보다 2,427억 4천 5백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 2021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전년 보다 열악해진 상황임.

더욱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기존 20.46%에서 20.79%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전년 보다 오히려 2,071억 4천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재원의존도가 높은 교육비특별회계 구조를 감안할 때 재원확보에 불안정성이 가속될 우려가 있음.

[표2] 2019~2021년 재원 의존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재원	10,311,150	87.1	8,002,034	88.6	9,363,172	96.1
자체재원	1,525,442	12.9	1,034,458	11.4	378,822	3.9
지방교육채	0	0	0	0	0	0
계	11,836,592	100	9,036,492	100	9,741,994	100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10월)을 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7조원 감소된(진도율 2.2%p 하락)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청의 재원구조가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 등으로 [표2]와 같이 이전수입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더욱 커진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수업 확대 등의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재정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3] 2019~2021년 자체재원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업료 및 입학금	99,867	6.5	61,273	5.9	348	0.1
사용료 및 수수료	5,340	0.4	2,038	0.2	4,901	1.3
자산수입	11,086	0.7	9,382	0.9	11,892	3.1
이자수입	14,975	1.0	10,605	1.0	7,693	2.0
순세계잉여금	769,860	50.5	381,143	36.8	280,604	74.1
전년도이월사업비	542,144	35.5	487,441	47.1	0	0.0
기타수입	82,170	5.4	82,576	8.0	73,384	19.4
계	1,525,442	100.0	1,034,458	100.0	378,822	100.0

-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의존성을 탈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경기 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비 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재원의 확보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입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임.³⁾

3)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표4] 중기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계	55,199,974	10,305,232	10,680,842	11,113,162	11,421,333	11,679,405	3.2
교 특 회 계	54,844,809	10,205,936	10,557,385	11,025,151	11,391,319	11,665,018	3.2
기 금	355,165	99,296	123,457	88,011	30,014	14,387	△38.3

- 계획기간 중 중기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55조 1,999억 7천 4백만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 운영비(사립학교 포함) 증가, 청사 이전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전(신축)⁵⁾ 등의 지출증가로 인해 연평균 3.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재정계획 23p).

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재정계획 23~28pp)

- 정부는 2021년 이후 코로나19 진정으로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⁶⁾ 가속화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⑩ (생략)

- 4)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재정계획에는(28p) 본청 신청사의 경우 사업지연 등으로 2025년까지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기금 존속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함.
- 5)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강남서초 청사이전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1억 2천만원과 청사이전 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⁷⁾

다만 재정수입(국세수입)의 연도별 증가율은 점진적인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교육청은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상의 중기 이전수입 연평균 증가율 4.0% 및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4.6%와 비슷한 규모의 증가율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활동의 불안정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성 및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이전수입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생각됨.

[표5]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4	2025년	연평균 증가율
계	53,646,436	9,847,913	10,243,818	10,818,105	11,219,471	11,517,129	4.0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32,947,083	6,015,270	6,234,300	6,652,153	6,934,222	7,111,138	4.3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20,650,203	3,822,813	3,999,688	4,156,122	4,275,419	4,396,161	3.6
기 타 (민 간) 이 전 수 입	49,150	9,830	9,830	9,830	9,830	9,830	0.0

- 특히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치 보다 평균 3%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이전수입도 이러한 경제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6)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저탄소·친환경경제 요구 증대, 양극화 심화 우려 등

7)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0.9.1) 참고.

[표6] 2021년도 국내 경제성장률⁸⁾ 기관별 전망(2020.10 기준)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20년(p)	2021년(p)
정부	2020년6월1일	1.00%	3.60%
한국은행	2020년8월27일	-1.30%	2.80%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9월29일	-1.60%	2.30%
KDI	2020년9월8일	-1.10%	3.50%
IMF	2020년10월13일	-1.90%	2.90%
OECD	2020년9월16일	-1.00%	3.10%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10월30일	-0.80%	3.00%
LG경제연구원	2020년8월6일	-1.00%	2.50%
평 균		-0.97	2.97%

- 다만, 2021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 개편,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지속될 수 있는바, 이는 자칫 내국세 감소를 가중시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나. 중기 재정지출 전망(재정계획 28~34pp)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와 지방교육채상환 등의 보전지출 증가,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기금전출금 증가로 인해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 지출은 학령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초 등돌봄교실, 원격교육지원 등의 증가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별 총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2%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8)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표7]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계	55,199,974	10,305,232	10,680,842	11,113,162	11,421,333	11,679,405	3.2
교육비특별회계	54,844,809	10,205,936	10,557,385	11,025,151	11,391,319	11,665,018	3.4
경 상 지 출	37,279,589	7,160,525	7,290,208	7,365,532	7,608,811	7,854,513	2.3
사 업 비	17,490,429	3,035,105	3,251,223	3,643,555	3,766,332	3,794,214	5.7
예 비 비	74,791	10,306	15,954	16,064	16,176	16,291	12.1
기 금	355,165	99,296	123,457	88,011	30,014	14,387	△38.3
기금경상지출							0.0
기금사업비	355,165	99,296	123,457	88,011	30,014	14,387	△38.3

- 다음으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과⁹⁾ 재량지출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의무지출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누리과정교육비(△3.8%) 및 교육급여(△0.2%) 감소와 이자지출(△9.7)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인건비 증가와 학비지원 등의 확대로 인해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량지출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증가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8]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계(A)	54,844,809	10,205,936	10,557,385	11,025,151	11,391,319	11,665,018	3.4
의 무 지 출	44,472,944	8,543,709	8,699,048	8,829,208	9,077,917	9,323,062	2.2
재 량 지 출 (B)	10,371,865	1,662,227	1,858,337	2,195,943	2,313,402	2,341,956	8.9
B / A × 100	18.9	16.3	17.6	19.9	20.3	20.1	

9)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다만 [표8]과 같이 계획기간 중 재량지출은 전체 재정지출 대비 18.9% 규모로 계획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의 재량권 확대에 의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증가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선심성 지출의 증가로 변질될 우려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해야 할 것임.

3. 성과계획안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 (이하 ‘2021 성과계획안’이라 함)을 제출하였음.¹⁰⁾
- 금번 2021 성과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15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92개 단위과제(성과지표수 89개)로 계획되었고,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23.6%인 2조 3,026억 2천 6백만원으로, 2020년도 보다 6,364

10)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¹¹⁾)

[표9] 2018~2021 성과계획 세부사업 수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수	예산액
2018	110	2,605,972
2019	111	2,682,620
2020	111	2,939,062
2021	111	2,302,626

- 2021 성과계획안은 모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정량(계량)지표로 설정하면서 3개의 투입지표, 7개의 과정지표, 36개의 산출지표, 43개의 결과지표로 세분화하고 있음.

성과계획의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궁극적으로 재정 투입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예산안과 연계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그러나 교육청의 2021 성과계획안의 경우 각 성과지표가 세부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객관적이고 적절한 측정산식을 도입하였는지, 예산안과 연계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등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임.

- 예를 들어 성과지표 성격과 관련해서¹²⁾ 2021 성과계획안에서는 ‘I-1②유치원 컨설팅장학 만족도’ 등의 19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1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성과지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면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각 사업들의 만족도 측정이 대체로 전체 응답자(또는 참여자 수) 중 만족 이상 응답수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 측정방법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19개 사업 중 ‘I-2④초등 생존수영교육 만족도’, ‘II-3①초등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IV-1①과대학교 학교보건지원 강사 운영 만족도’, ‘IV-2①교육대상자 설문 만족도’, ‘V-2②학부모 교육 만족도’, ‘V-3⑤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등의 6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로, ‘IV-1②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절차 만족도’의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로, 나머지 12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 혼용하여 설정하고 있음(2021 성과계획안 182~188pp).

이러한 문제는 이수율 및 참여율 등의 성과지표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10] 2021 성과계획안 중 참여율 및 이수율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정량화	성격	비고
참여율	I-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교실혁명	⑦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참여율	(참여 교원 수 /전체 교원 수)×100	88%	정량	결과	교육 혁신과
	II-1. 교육의 공공성 확립	①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여율	(참여 사립유치원수/전체 사립유치원수)×100	77%	정량	결과	유아 교육과
	II-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② 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방과후 과정 원아수/전체원아수)×100	63%	정량	산출	유아 교육과
	V-2. 학부모, 시민과 함께 더 넓은 학교 만들기	⑬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율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 인구 수/서울시 인구수)×100	35.5%	정량	산출	평생 교육과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정량화	성격	비고
이수율	I-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교실혁명	⑨ 중학교 교사별 과 정중심 평가 교원 연 수 이수율	(중학교 과정중심평 가 연수 이수 교사 누적인원/중386교× 5교과)×100	63%	정량	결과	중등 교육과
	1-3. 진로 개척 역량 함양	③ 직업계고 교원 연 수 이수율	(연수 이수자 수/연 수 신청 교원 수)×1 00	94.6%	정량	결과	진로직업 교육과
	V-1. 학교 자율 운영 체제 구축	⑥ 교육공무직원 신 규채용자 직무 연수 이수율	(연수 이수 인원 수/ 연수 계획 인원 수) × 100	88%	정량	산출	노사협력 담당관
	V-3 현장 중심의 교육행 정 조직과 문화	⑦ 노사관계 직무연 수 이수율	(연수 이수 인원 수/ 연수 신청 인원 수)×1 00	97%	정량	결과	노사협력 담당관

- 이와 같이 교육청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과정, 투입, 산출, 결과지표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성과지표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예산안 심의 시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지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비롯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음.¹³⁾

그러나 수년간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성과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계획안 수립과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겠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¹⁴⁾

4.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성인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¹⁵⁾

1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6p 참고.

14) 현재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리는 예산담당관 소관임. 2020~2021년 성과목표 변동 내역은 [붙임1] 참고.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교육청은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

[표11]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3개	142,395,159	204,716,900	△62,321,741	△30.4%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2개	62,973,924	103,509,186	△40,535,262	△39.2%
2. 성별영향평가사업	0개	0	0	0	-
3. 교육부지정사업	18개	78,138,314	99,942,773	△21,804,459	△21.8%
4. 자체선정사업*	3개	1,282,921	1,264,941	17,980	1.42%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33개 사업에 2020년 보다 623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한 1,423억 9천 5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세부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16)

15)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16)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오디세이학교운영(성인지 예산안 77p)'과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성인지 예산안 142p)', '주민참여예산운영(성인지 예산안 177p)' 등 3개 사업에 불과함.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안은 여전히 자체사업 수가 적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12]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사업 분류	2021년 예산안(A)	2020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중등교원연수지원	1	1,943,052	1,841,203	101,849	5.5%
교장및기관장임용	1	82,020	84,820	△2,800	△3.3%
인사관리	1	1,543,046	1,193,946	349,100	29.2%
지방공무원인사운영	1	829,400	640,400	189,000	29.5%
교원노사관리	3	218,774	227,644	△8,870	△3.9%
오디세이학교운영	4	649,102	649,102	0	0.0%
기초학력향상지원	3	10,646,724	3,171,252	7,475,472	235.7%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3	6,280,800	4,585,350	1,695,450	37.0%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	72,830	79,150	△6,320	△8.0%
중등수석교사제운영	3	677,160	686,136	△8,976	△1.3%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1	2,500,750	2,285,804	214,946	9.4%
방과후활동지원	1	4,702,450	4,563,450	139,000	3.0%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	13,578,700	13,676,600	△97,900	△0.7%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3	11,683,298	8,785,330	2,897,968	33.0%
영어체험교육지원	3	1,019,860	1,215,751	△195,891	△16.1%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1	36,396	36,396	0	0.0%
맞춤형취업기능강화	1	677,867	1,345,945	△668,078	△49.6%
중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3	776,000	10,037,240	△9,261,240	△92.3%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3	1,999,245	63,493	1,935,752	3,048.8%
선진운동부육성	3	1,720,600	1,470,600	250,000	17.0%
문화예술지원	1	5,480,336	5,396,934	83,402	1.5%
청소년단체활동지원	3	497,800	547,800	△50,000	△9.1%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4	550,799	530,339	20,460	3.9%
학교안전망구축	3	1,509,320	1,279,400	229,920	18.0%
맞춤식진로교육	3	4,418,640	5,350,020	△931,380	△17.4%
초등돌봄교실운영	1	31,018,187	71,907,838	△40,889,651	△56.9%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3	19,760,138	32,162,941	△12,402,803	△38.6%
화장실개선	3	15,933,163	25,348,312	△9,415,149	△37.1%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3	184,660	166,230	18,430	11.1%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3	706,734	652,904	53,830	8.2%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1	581,720	473,820	107,900	22.8%
주민참여예산운영	4	83,020	85,500	△2,480	△2.9%
학교운영위원회	3	32,568	73,220	△40,652	△55.5%
계		142,395,159	204,716,900	△62,321,741	△30.4%

-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사업예산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도록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방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바, 정책 효과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함.
- 그러나 교육청은 금번 성인지 예산안 중 일부사업에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성과목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국정목표인 “양성고용평등” 실현을 위해서 특정 성별의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문화예술지원, 성인지 예산안 135p/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성인지 예산안 165p), 성과목표를 특정성별에 유리하도록 설정하는 등(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성인지 예산안 169p)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신뢰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가령,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사업의 경우, 동 사업은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생 지원 시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며 교육복지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학생 중 여학생만을 만족도 측정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 성인지 예산안으로는 남학생에 대한 지원 효과는 분석할 수 없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청은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선정한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개별사업의 성과목표가 성평등 실현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사업의 제반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선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성인지 사업선정 및 측정산식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운영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17)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31~46pp, 사업별 설명자료 5~14pp)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1,898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4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표13] 지방재정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보통교부금	4,933,216	5,109,331	△176,115	△3.4	4,933,216	0
특별교부금	79,920	110,947	△31,027	△28.0	0	79,920
증액교부금	176,710	0	176,710	순증	176,710	0
계	5,189,846	5,220,278	△30,432	△0.6	5,109,926	79,920

① 보통교부금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18) 따라 정부(교육부)가 “내국세 20.79%의 97% 및 교육세 일

17)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는 [붙임2] 참고.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¹⁹⁾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임.²⁰⁾

[표14]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기본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자체노력 수요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2])	
측정항목	측정단위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인건비	교원수, 교원 증원 수 등	1.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통폐합 학교, 학생 수
2. 학교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 수 등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학교별 신설비 절감액
3. 교육행정비	학교,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등	4.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4. 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수급자 수 등	7.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건축연면적, 토지면적 등	(기존의 3. 5. 6.의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 지원 등은 삭제됨)	
6. 유아교육비	유아, 교원, 유치원 수 등		
7.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급, 수급자 수, 교실 수 등		
8. 재정결함 보전	원리금상환액,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등		

-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20년도 보다 1,761억 1천 5백만원이 감소한 5조 4,9332억 1천 6백만이 편성되었는바(교육부,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지방교육재정과-6706, 2020.10.8.),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인해 내국세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19)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수업료 및 입학금,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p>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A×B)×C-D</p> <p>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p> <p>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p> <p>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p> <p>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총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총당되는 안분액</p>

세목별 조세체계는 [붙임3] 참고.

20) 보통교부금은 시·도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포괄적 교부금임.

- 다만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의 50.6%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교육세, 시·도세 등의 법정전입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수업료및입학금 등의 자체수입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금 총 규모가 감소하였는바,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건축재정 운용에 대비하여 적정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5]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측정항목		
기준재정 수요액 (B)	합 계		8,651,954,262
	1.교직원인건비		6,438,155,428
		교원	4,987,382,896
		교육전문직원	66,144,966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661,245,839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	497,369,401
		교원 명예퇴직	269,067,804
		교원 명예퇴직('19년 정산분)	△43,055,478
	2.학교교육과정운영비		1,137,307,404
		가. 학교경비	560,987,400
		나. 학급경비	156,953,337
		다. 학생경비	378,011,267
		마. 교과교실 운영비(시설비 포함)	24,171,200
		사. 추가운영비	17,184,200
	3.교육행정비		103,344,459
		가. 기관운영비	99,575,595
		나. 지방선거경비	3,768,864
	4.교육복지지원비		225,254,368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3,466,667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221,787,701
	5.교육기관 등 시설비		527,713,266
		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440,810,547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56,677,298
		다.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30,225,421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
		사. 학교기숙사 시설비	-
	아. 청사 신설 이전비	-	

구 분	측정항목		
	6.유아교육비		72,995,660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42,569,400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30,426,260
	7.방과후학교사업비		74,850,240
		가.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2,725,151
		나. 자유수강권 지원	18,222,502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시설비 포함)	43,902,587
	8.재정결합보전		68,233,704
		가. 지방교육채 상환	38,624,704
		나. 민자사업 지급금	29,609,000
	※ 자체노력수요		4,099,733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4,099,733	
기준재정 수입액 (C)	합 계		3,718,738,274
	1.법정전입금		3,389,861,894
		지방교육세	1,636,596,617
		시도세	1,546,092,872
		담배소비세	162,965,6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8,339,725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	35,867,000
	2.수업료및입학금수입		231,298,097
	3.학교용지부담금		-
	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97,578,283
교부할 금액(G=A+B-C+D+E+F)		4,933,215,988	

②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K-에듀파인운영지원 등 116개 사업에 799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0년도 1,109억 4천 7백만원 보다 310억 2천 7백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음.21)

21) 다만 교육청은 교육부가 통보한 특별교부금 사업들(국가시책사업) 중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체성이 부족하여 차후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 금번 본예산안에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통보된 사업 중 일부를 편성하지 않았음.

- | |
|------------------------------------|
| ①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2천 5백만원 |
| ②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억 5천 4백만원 |
| ③ 학교안전교육내실화 1억 4천 2백만원 |
| ④ 대입전형지원 84억 1천 2백만원 |
| ⑤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분석진단 1천 8백만원 |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²²⁾ 따라 그동안 일방적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 추진으로 인해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 부담을 가중시켜왔으며,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의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음.

특히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²³⁾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표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자원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 교육세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3%)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 이러한 특별교부금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청은 2018년부터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2017.9.26)을 수립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예산 편성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여 왔음.²⁴⁾

[표17] 2018~2021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²⁵⁾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예산액)	10,912,569	100.0%	11,836,595	100.0%	10,556,352	100.0%	9,741,994	100.0%
교부합계	181,679	1.7%	226,262	1.9%	187,509	1.8%	79,920	0.8
국가시책사업	107,749	1.0%	121,542	1.0%	125,528	1.2	79,920	0.8
지역교육현안수요	56,164	0.5%	79,430	0.7%	38,468	0.4	-	-
재해대책수요	17,766	0.2%	25,290	0.2%	23,513	0.2	-	-

24)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금액 중 3%를 해당재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음(예산안 총칙 제9조).

25) 2018~2019 결산기준, 2020 4차 추경, 2021 예산(안) 기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사업들을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령 신규사업, 대규모 재원(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교육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교육공무직의 추가 인건비 편성 등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업 중단 및 예산 반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증액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와²⁶⁾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따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의(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국가부담액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1,76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²⁷⁾
- 이와 관련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칙<법률 제16673호, 2019.12.3>에서 국가부담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 수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유효기간 만료 후 국가 부담분 또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27)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비율은 국가 48%, 교육청 47.5%, 서울시 4.5%임.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울시 부담분의 축소 등에 따라 교육청 부담분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국 고 보 조 금	21,218	141,811	△120,593	△85.0	0	21,218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보다 1,205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된 212억 1천 8만원이 편성되었음. 감액편성의 주된 요인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가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던 국가부담분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 하겠음.

[표18] 국고보조금 편성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2021년도 편성(안)
1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	12,617
2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990
3	중등교육과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사업운영	2,048
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흡연예방교육	3,107
5		전국소년체전지원	368
6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999
7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연수비)	89
합 계			212,18

- 국고보조금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서 금번 예산안에는 ‘교육급여(126억 1천 7백만원)’, ‘초등돌봄교실 확충(9억 9천만원)’,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사업운영(20억 4천 8백

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31억 7백만원)', '전국소년체전지원(3억 6천 8백만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19억 9천 9백만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연수비(8천 9백만원)'의 7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표18] 2019~2020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분담주체	재원분담					
	2019		2020		2021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중앙정부(교육급여보조금)	17,512	42.6%	12,991	47.9%	12,617	48.7%
지방자치단체(교육급여보조금)	11,674	28.4%	8,660	31.9%	8,411	32.5%
소 계	29,186	71.0%	21,651	79.8%	21,028	81.2%
교육청	11,915	29.0%	5,488	20.2%	4,876	18.8%
총 계	41,101	100.0%	27,139	100.0%	25,904	100.0%

다)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특별회계전입금	537,591	549,314	△11,723	△2.1	0	537,591

-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117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한 5,375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9]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만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유아학비	6	유아학비	24	보육료	31
방과후과정비	5	방과후과정비	7		

[표20] 2018~2021 누리과정 편성 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어린이집	3세	41,409	144,479,680	39,985	139,147,800	37,734	142,357,040	32,606	126,380,856
	4세	31,509	109,651,320	31,178	108,499,440	30,512	116,007,669	27,491	106,555,116
	5세	32,590	113,413,200	29,470	102,555,600	27,200	103,923,881	26,451	102,524,076
소계	105,508	367,544,200	100,633	350,202,840	95,446	362,288,590	86,548	335,460,048	
유치원	3세	22,942	63,315,240	22,661	62,642,280	19,206	58,413,240	17,677	52,980,360
	4세	30,040	81,840,720	30,230	81,790,320	27,199	80,584,440	24,532	71,701,680
	5세	33,891	90,797,608	30,946	81,263,520	32,158	93,416,400	27,436	77,449,200
소계	86,873	235,953,568	83,837	225,696,120	78,563	232,414,080	69,645	202,131,240	
총계	192,381	603,497,768	184,470	575,898,960	174,009	594,702,670	156,193	537,591,288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된 세입 재원으로,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28) 따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2022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임.

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 과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의 '무상교육'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을 국가가(교육부·보건복지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었음.
-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9년 10월 31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²⁹⁾

[표21]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 구조 및 재원

<p>정부 <일반회계></p> <p>↓</p> <p>교육부장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p> <p>↓</p> <p>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p> <p>↓</p> <p>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일반회계></p> <p>↓</p> <p>학부모</p>	<p>○재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금: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 차입금: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 일시차입금 <p>○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의 20.79%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u>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u>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 <p>※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7%, 특별교부금3%로 구분됨</p>
---	---

- 동 특별회계는 2022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으로 향후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여전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재원 분담에 대한 논란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없음.

29)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교육청 의견

교육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안에 찬성
기획재정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별다른 이견 없으나, 현행법 고려 3년 연장 검토
전북교육청	○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이 개정 필요, 전액 국고부담으로 보건복지부에 편성되어야 함. ○ 해당법은 현행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2019.12.31. 경과 후 일몰되어야 함.

[표22] 누리과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현황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제34조(무상보육) ·무상보육 대상을 영유아 전체로 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무상교육 대상자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로 함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무상보육 대상자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로 함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어린이집 누리과정 실시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

-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기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47~62pp, 사업별 설명자료 16~22pp)

[표23] 2018~2021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광역	3,096,678	3,165,942	3,356,792	3,601,427
기초	3,600	3,502	2,598	4,123
합계	3,100,278	3,169,444	3,359,390	3,605,550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0년도 보다 1,470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조 6,055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음.

가) 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지방교육세	1,730,527	1,644,977	85,550	5.2	1,730,527	0
담배소비세	261,068	253,957	7,111	2.8	261,068	0
시도세	1,431,797	1,400,083	31,714	2.3	1,431,797	0
합부교담용지급	7,386	13,822	△6,436	△46.6	7,386	0
지교발부교음유보재전점	105,918	100,065	5,853	5.8	105,918	0
교육급여보조금	8,411	8,660	△249	△2.9	0	8,411
문상교입육경비	16,567	0	16,567	순증	0	16,567
계	3,561,674	3,421,564	140,110	4.1	3,536,696	24,978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020년도 보다 1,401억 1천만원이 증가한 3조 5,616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³⁰⁾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세입재원으로, 2020년도 보다 855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조 7,305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2020년도 보다 317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1조 4,317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71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2,610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³¹⁾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73억 8천 6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1,059억 1천 8백만원), 교육급여보조금(84억 1천 1백만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이(165억 6천 7백만원) 편성되었음.

[표24] 2021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비법정) 내역³²⁾

(단위: 천원)

세 목 구 분	2020년 본예산 (A)	전출금 예산 편성 예정액				전년대비 (B-A)	
		계 (B)	2021년 분	2019년 정산분	지방소비세 확대분		
법정 전출금	보통세 (10%)	1,400,083,000	1,395,930,109	1,395,930,109		△4,152,891	
	지방교육세 (100%)	1,644,977,000	1,730,526,909	1,662,360,000	68,166,909	85,549,909	
	담배소비세 (45%)	253,957,050	261,067,500	261,067,500		7,110,450	
	소계	3,299,017,050	3,387,524,518	3,319,357,609	-	68,166,909	88,507,468
	학교용지 부담금	13,821,862	7,386,486	7,386,486			△6,435,376
	교육급여		7,384,767	7,384,767			7,384,767
	무상교육 (광역자치단 체 분)	5,728,500	8,283,282	8,283,282			2,554,782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 전입금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7개 세목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31)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금)과 교육급여보조금 제외

세 목 구 분		2020년 본예산 (A)	전출금 예산 편성 예정액				전년대비 (B-A)
			계 (B)	2021년 분	2019년 정산분	지방소비세 확대분	
비법정 전출금	조례상 전출금	67,299,072	35,253,090	35,253,090			△32,045,982
	도서관 운영비 지원		-				0
	기타		-				0
합 계		3,385,866,484	3,438,447,376	3,370,280,467	-	68,166,909	52,580,892

나)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광역자치단체	42,276	36,912	5,364	14.5	3,300	38,976
기초자치단체	1,600	0	1,600	순증	0	1,600
소계	43,876	36,912	6,964	18.9	3,300	40,576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33)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34)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재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은 2020년도 보다 69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438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적으로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은 33억원이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20개 사업) 389억 7천 6백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 신설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따른 중량구청 분담금 16억원임.

- 이중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2021년도 예산안에는³⁵⁾ ‘일반·특별교육경비(352억 5천 3백만원)’과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121억 2천 3백만원)’으로 총 473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은 개별 학교 선정 후 편성·집행되어야 할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40억 7천 5백만원)’, ‘학교 체육관 건립(8억원)’과 ‘특별교육지원사업(35억 2천 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편성하였음.

- 상기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들은 2021 회계연도 중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될 것임.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35)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안」 952p 참조.

이는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 전입금 예산안상의 세입·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³⁶⁾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³⁷⁾

- 다만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나 학교 체육관 건립, 특별교육지원사업 등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상 사업대상(학교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으로 인해 사업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재원을 교육청 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³⁸⁾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함으로써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청은 법령이 정한 예산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25] 2019~2021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³⁹⁾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대비증감	2020년도 대비증감률
계	53,300	67,299	35,253	△32,046	△47.6
일반교육지원사업	48,550	60,570	31,728	△28,842	△47.6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7,139	7,139	6,192	△947	△13.3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239	5,239	4,992	△247	△4.7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300	1,300	600	△700	△53.8
3.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600	600	600		
4.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	-	-	-	-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	41,411	53,431	25,536	△27,895	△52.2
5.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4,000	5,750	4,075	△1,675	△29.1
6.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	-	-	-	-

36)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7) 「2020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평생교육국 예산에는(920p) 전출금으로 53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38)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2021년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39)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121억 2천 3백만원) 제외.

7.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500	1,610	1,344	△266	△16.5
8. 유아교육 지원	975	610	610	-	-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512	1,512	1,512	-	-
10.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1,100	1,100	-	△1,100	△100.0
11.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1,370	3,860	-	△3,860	△100.0
12. 문화예술특별교실 설치	1,080	1,080	720	△360	△33.3
13.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350	△350	△50.0
14.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400	5,767	5,800	33	0.6
15. 학교CCTV교체	1,535	1,535	1,535	-	-
16.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	-	-	-	-
17.서울형메이커스페이스운영	1,000	1,000	1,000	-	-
18.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1,410	1,410	940	△470	△33.3
19. 학교 체육관 건립	14,900	17,500	800	△16,700	△95.4
20.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지원	3,000	3,000	2,100	△900	△30.0
21. 특성화고 드론과학실 및 드론교육원 조성	1,900	-	-	-	-
22.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179	1,200	1,200	-	-
23.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850	550	550	-	-
24. 소상공인 인식 개선 사업	-	130	-	△130	△100.0
25. 찾아가는 학교안전점검단	-	600	-	△600	△100.0
26. 학교보안관실 설치지원	-	200	-	△200	△100.0
27. 학교급식노후 조리기구 현대화사업	-	2,317	1,000	△1,317	△56.8
28.마을결합중점학교	-	1,000	500	△500	△50.0
29. 유치원방과후과정 돌봄지원 인력 지원	-	1,000	1,000	-	-
30.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 진흥 캠페인	-	-	500	500	100.0
특별교육지원사업	4,750	6,729	3,525	△3,204	△47.6

○ 다음으로 비법정이전수입 중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2021 서울특별시 예산(안)」 보통세 수입은 14조 4,898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서울시가 통보한 금번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는(미편성분 포함,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제외)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0.24%에 불과하여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인 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표26] 2018년도~20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편성기준액 (보통세)	조례상편성가용액 (보통세0.6%이내)	의회심의 요청액	의회심의요청액의 편성기준액 대비비율	최종편성액
2018	12,818,928	76,914	51,025	0.40	28,268
2019	13,244,792	79,469	53,300	0.40	53,300
2020	14,496,136	86,977	53,300	0.37	67,299
2021	14,489,874	86,939	35,253	0.24	-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서울시와 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의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40) 서울시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시가 교육청에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금으로 인식하는 등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적정 교육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의 산정비율을 확정적으로 명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금번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의 경우도 서울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같이 서울시가 특별회계 전출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등 특정사업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63~69pp, 사업별 설명자료 23~26pp)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기타이전수입	8,967	9,899	△932	△9.4	2,625	6,342

40) 2020년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회의결과 알림(참여협력담당관-10760, 2020.10.14.); 2020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 의위원회 결과 알림(교육정책과-16193).

- 금번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평가 지원금(62억 7천 2백만원)’과 ‘농협 교육금고 약정 지원금(26억 2천 5백만원)’,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3천만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생 연수비(4천만원)’ 등 총 89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중 ‘농협 교육금고 약정 지원금’은 교육청이 지난 10월 13일 농협(주)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비 및 제휴카드 출연금 이행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6억 2천 5백만원씩 총 105억원을 지원하는 것임.

이는 서울시의 금고 지정 약정에 따른 출연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금고 지정은행과는 3,015억원을, 2금고 지정은행과는 1,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는 등 약정기간 중 금고로부터 총 4,115억원을 출연받기로 약정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청이 농협(주)과 체결한 협력사업비 등은 매우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바, 교육청은 향후 금고 지정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자체수입(예산안 71~130pp, 사업별 설명자료 27~54pp)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관	항	목				
합계			98,218	181,534	△83,316	△45.9
교수-학습활동수입			2,140,684	106,412,926	△104,272,242	△98.0
	기본적교육수입		348,108	104,308,326	△103,960,218	
		입학금	1,128	53,300	△52,172	
		수업료	85,932	103,811,914	△103,725,982	
		지난년도수업료	261,048	443,112	△182,064	
	선택적교육수입		1,792,576	2,104,600	△312,024	
		기숙사및급식	421,096	612,796	△191,700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관	항 목				
	평생학습수입	1,371,480	1,491,804	△120,324	
행정활동수입		4,900,646	5,321,044	△420,398	△7.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900,646	5,321,044	△420,398	
	사용료수입	4,363,479	4,758,794	△395,315	
	수수료수입	537,167	562,250	△25,083	
자산수입		11,891,892	15,261,694	△3,369,802	△22.1
	자산임대수입	456,517	451,656	4,861	
	임대료수입	456,517	451,656	4,861	
	자산매각대	11,435,375	14,810,038	△3,374,663	
	토지매각	11,402,508	14,766,960	△3,364,452	
	기타유형자산매각	22,505	31,990	△9,485	
	무형자산매각	10,362	11,088	△726	
이자수입		7,693,431	7,100,677	592,754	8.3
	이자수입	7,693,431	7,100,677	592,754	
	이자수입	7,693,431	7,100,677	592,754	
금융자산회수		19,190,620	22,010,292	△2,819,672	△12.8
	용자금원금회수	18,840,620	21,660,292	△2,819,672	
	용자금원금회수	18,840,620	21,660,292	△2,819,672	
	보증금회수	350,000	350,000	-	
	보증금회수	350,000	350,000	-	
기타수입		52,400,973	25,427,067	26,973,906	106.1
	제재금수입	767,367	731,015	36,352	
	변상금	214,979	209,201	5,778	
	위약금	189,439	141,589	47,850	
	연체료	113,049	120,825	△7,776	
	과태료	249,900	259,400	△9,500	
	기타수입	51,064,488	24,103,428	26,961,060	
	생산물매각대	1,500	1,500	-	
	그외수입	51,062,988	24,101,928	26,961,060	
	과년도수입	569,118	592,624	△23,506	
	과년도수입	569,118	592,624	△23,506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20년 보다 833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한 982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기본적교육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전년도 보다 1,039억 6천만원이 감액된 3억 4천 8백만이 편성되었고, 선택적교육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3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17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용료및수수료수입도 2020년 보다 4억 2천만원 감소한 49억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임대수입은 4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매각

대는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등의 매각 물량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33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한 114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그 밖에 이자수입은 76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에 대한 회수액으로 18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로 3억 5천만원이, 변상금, 위약금 등의 제재금수입(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으로 7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리고 생산물매각대 등의 기타수입이 510억 6천 4백만원,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의 과년도 수입은 5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체수입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대비 1.0% 규모의 매우 적은 세입 재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수입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적기 부과 등으로 인한 임대 수익 증대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신속한 부과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전년도이월금(예산안 137~141pp, 사업별 설명자료 51~53pp)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전 년 도 이 월 금	280,604	523,349	△241,745	△46.4	280,604	

-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2,806억 4백만원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2,417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⁴¹⁾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⁴²⁾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⁴³⁾

예산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상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세출예산의 불용이 발생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의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4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42)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43)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표27] 2018~2021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	506,772	671,796	523,349	280,604
추경예산	515,188	769,861	381,143	-

○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표27) 참고), 교육청은 본예산 기준으로 연평균 5,673억 5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본예산 평균 규모 9조 5,387억 4천 8백만원((표1) 참고) 대비 약 5.9%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9조 7,419억 9천 4백만원 대비 약 2.9%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0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입재원의 감소, 세출사업의 축소·변경·취소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⁴⁴⁾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수년간의 본예산 편성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하는 것이 지양되는 세입재원으로,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에 (예산안 1,675p) 따른 불용추정액(3,130억 4천 6백만원)의 89.6%에 해당하는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음.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이 감소되었고 2021년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입감소가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는 상황인바, 교육청은 이러한 세입재원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따라서 교육청이 금번 세입예산안에 2020년 불용추정액의 80%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4)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2,361억 1천 5백만원의 세입감액을 단행하였음.

6.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인건비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5,084,428	52.2	4,727,204	357,224	7.6	5,084,428	0	
	사립학교 인건비	1,294,382	13.3	1,343,298	△48,916	△3.6	1,294,382	0	
	계	6,378,810	65.5	6,070,502	308,308	5.1	6,378,810	0	
경상비	기관운영비	30,023	0.3	29,757	266	0.9	30,023	0	
	학교운영비	공립	675,666	6.9	829,052	△153,386	△18.5	675,666	0
		사립	208,821	2.2	72,747	136,074	187.1	167,034	41,787
		소계	884,487	9.1	901,799	△17,312	△1.9	842,700	41,787
계	914,510	9.4	931,556	△17,046	△1.8	872,723	41,787		
사업비	교육사업비	1,873,607	19.2	2,067,774	△194,167	△9.4	1,213,169	660,438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108,452	1.1	159,889	△51,437	△32.2	106,852	1,600
		일반시설	283,260	2.9	645,260	△362,000	△56.1	277,460	5,800
		급식시설	55,759	0.6	90,034	△34,275	△38.1	54,759	1,000
		소계	447,471	4.6	895,183	△447,712	△50.0	439,071	8,400
계	2,321,078	23.8	2,962,957	△641,879	△21.7	1,652,240	668,838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교육채 상환 등	15,605	0.2	5,727	9,878	172.5	15,605	0	
	B T L 상 환	101,926	1.0	103,919	△1,993	△1.9	101,926	0	
	계	117,531	1.2	109,646	7,885	7.2	117,531	0	
예비비 및 기타	10,065	0.1	10,000	65	0.7	10,065	0		
합	계	9,741,994	100.0	10,084,661	△342,667	△3.4	9,031,369	710,625	

-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보다 3,426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한 9조 7,419억 9천 4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보다 3,083억 8백만원이 증가한 6조 3,788억 1천만원을 편성되었고 기관운영비 등 경상비는 전년보다 170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9,145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각각 1조 8,736억 7백만원과 4,474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BTL 상환은 1,019억 2천 6백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은 156억 5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 100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8] 2019~2020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성질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추경까지	2021년 예산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696,893	4,622,164	5,084,428
		사립학교인건비	1,159,858	1,371,666	1,294,382
		계	5,856,751	5,993,830	6,378,810
	기관운영비		34,055	29,110	30,023
	학교 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751,802	848,961	675,666
		사립학교운영비	95,910	74,788	208,821
		계	847,712	923,749	884,487
	복지사업비		1,477,284	1,678,943	1,234,426
	지방교육채 및 BTL		980,814	109,734	117,531
	계		9,196,616	8,735,366	8,645,277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 무기직제외)		727,358	925,769	639,181
	시설비	급식시설	102,693	82,287	55,759
		일반시설	738,904	655,260	283,260
		학교신증설	222,757	139,831	108,452
		계	1,064,354	877,378	447,471
	예비비		17,570	17,839	10,065
	계		1,809,282	1,820,986	1,096,717
총계		11,005,898	10,556,352	9,741,994	

○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복지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및 BTL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88.7%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표29] 2018~2021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대비 시설사업비(A/B)
2018	9,151,267	712,890	1,949,224	36.6
2019	9,380,315	771,653	1,937,965	39.8
2020	9,972,986	804,689	2,060,594	39.1
2021	9,741,994	447,471	1,873,607	23.9

○ 금번 세출예산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전체 세출예산의 23.8%인 2조 3,210억 7천 8백만원으로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941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한 1조 8,736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학교신증설 등의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477억 1천 2백만원이 감소한 4,474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안 중 시설사업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평균액인 7,630억 7천 7백만원의 58.6%만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교육사업비가 같은 기간 평균액 1조 9,825억 9천 4백만원의 94.5%가 편성된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더욱이 시설사업비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사업비 대비 약 38.5%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금번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23.9%만이 편성되어 세출사업별 편중현상이 매우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방과후등교육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 사업비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입학준비금지원 등의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비의 감액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30] 교육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인	적 자 원 운 용	29,926	1.6	28,411	1,515	5.3	29,661	265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435,289	23.2	507,032	△71,743	△14.1	363,802	71,487
교	육 복 지 지 원	1,234,426	65.9	1,355,253	△120,827	△8.9	660,277	574,149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29,796	1.6	40,905	△11,109	△27.2	25,790	4,006
평	생 교 육	29,938	1.6	28,099	1,839	6.5	28,059	1,879
직	업 교 육	920	0.1	812	108	13.3	920	0
교	육 행 정 일 반	113,312	6.0	107,262	6,050	5.6	104,660	8,652
합	계	1,873,607	100.0	2,067,774	△194,167	△9.4	1,213,169	660,438

[표31]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현황⁴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학	비	64,307	5.2	126,826	△62,519	△49.3	31,137	33,170
방	과	50,670	4.1	99,019	△48,349	△48.8	49,174	1,496
급	식	463,254	37.5	409,623	53,631	13.1	463,254	0
정	보	3,382	0.3	2,714	668	24.6	3,382	0
교	육	42,365	3.4	55,765	△13,400	△24.0	40,473	1,892
누	리	538,214	43.6	550,008	△11,794	△2.1	623	537,591
교	과	72,234	5.9	111,298	△39,064	△35.1	72,234	0
합	계	1,234,426	100.0	1,355,253	△120,827	△8.9	660,277	574,149

○ 특히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의 비중이 2018년부터 금번 예산안까지 매년 평균 0.36%씩 증가하고 있으며, 금번 세출예산안의 경우도 교육복지사업비가 교육사업비의 65.9% 규모로 편성되었음.⁴⁶⁾

교육청 세출구조의 경직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특정 사업영역의 편중·고착화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청은 경제불황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에 의한 세수감소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사업영역이 무리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적으로

45) 급식지원 : 무상급식 4,527억 3천 5백만원 포함
 고교 무상교육 : 2,621억원 편성

무상교육 지원 대상	사업부서	구 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공립고·공립특성화·고·방통고·각종학교 수업료					공립고 수업료 면제
공립고·방통고·공립 각종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315억원
사립고·사립특성화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지원과	인 건 비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674억원
사립고·사립특성화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지원과	학교운영비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446억원(특교 252, 지자체 166 포함)
공·립고 교과서비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64억원
사립고 교과서비	교육혁신과	교육사업비	교과서지원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122억원

46) ○ 2018~2021 교육사업비 대비 복지사업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교육사업비	1,949,224	1,945,019	2,060,594	1,873,607
교육복지	1,262,435	1,269,263	1,354,253	1,234,426
교육사업비 대비 교육복지비율	64.8%	65.3%	65.7%	65.9%

건의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민간전문가 운영의 실효성 문제

1) 사업 개요

- 교육청은 대변인 소관의 광고홍보자문관, 정책안전기획관 소관의 정책기획자문관, 정책전략자문관 등 현재 19개 사업영역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2) 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	연도	자문관명	예산금액 (자문수당)
대변인	2018	광고홍보자문관	10,400
	2019	광고홍보자문관	18,250
	2020	광고홍보자문관	13,000
	2021	광고홍보자문관	11,700
		소계	53,350
정책안전기획관	2018	협치총괄자문관, 정책기획자문관	19,680
	2019	정책기획자문관, 정책전략자문관	101,250
	2020	정책기획자문관, 정책전략자문관, 사회적가치자문관	8,764
	2021	정책기획자문관, 정책전략자문관, 사회적가치자문관	30,000
		교육갈등자문관 소계	159,694
참여협력 담당관	2018	지역사회협력자문관, 시민협력자문관	6,243
	2019	지역사회협력자문관, 시민협력자문관	38,982
	2020	지역사회협력자문관, 시민협력자문관	21,424
	2021	시민협력자문관, 교육복지자문관	18,480
		소계	85,129
노사협력 담당관	2018	노동정책자문관	19,680
	2019	노동정책자문관	20,500
	2020	노동정책자문관	20,500
	2021	노동정책자문관	18,500
		소계	79,180
교육 혁신과	2018	서울미래학교(에듀테크)자문관	1,000
	2019	서울미래학교(에듀테크)자문관	4,853
	2020	서울미래학교(에듀테크)자문관, 생태전환교육자문관	8,268
	2021	서울미래학교(에듀테크)자문관, 생태전환교육자문관	2,544
		소계	16,665
초등 교육과	2018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관	3,500
	2019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관	9,000

부서	연도	자문관명	예산금액 (자문수당)
	2020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관	3,600
	2021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관	3,600
	소계		19,700
중등 교육과	2018	영어교육자문관	2,000
	2019	영어교육자문관, 독서토론교육자문관	2,000
	2020	영어교육자문관, 독서토론교육자문관	2,848
	2021	영어교육자문관, 독서토론교육자문관	2,000
	소계		8,848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2018	민주시민교육자문관	6,000
	2019	세계시민교육정책자문관, 생활교육자문관	6,000
	2020	세계시민교육정책자문관, 생활교육자문관	2,969
	2021	세계시민교육정책자문관, 생활교육자문관	7,121
	소계		22,090
진로직업교육과	2018	-	-
	2019	국제화교육지원자문관	-
	2020	국제화교육지원자문관	-
	2021	국제화교육지원자문관	3,500
	소계		3,500
교육시설안전과	2018	서울교육공간자문관, 신청사공간건축자문관 서울색채디자인자문관	37,920
	2019	서울교육공간자문관, 신청사공간건축자문관 서울색채디자인자문관	73,760
	2020	서울교육공간자문관, 신청사공간건축자문관 서울색채디자인자문관	45,410
	2021	서울교육공간자문관, 신청사공간건축자문관 서울색채디자인자문관	38,010
	소계		195,100
합계	2018	민간전문가	106,423
	2019	민간전문가	274,595
	2020	민간전문가	126,783
	2021	민간전문가	135,455
	총 합계		507,801

○ 금번 세출예산안에는 전년도 보다 8백만원이 증가한 1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행·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임.

[표32] 민간전문가 제도와 정책자문위원회 비교

구분	민간전문가 제도 ⁴⁷⁾	정책자문위원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위원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업무 참여 및 자문 등 역할 수행 •해당 정책 분야 정책 제안 및 추진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2시간 미만) 100,000원 - (2시간 이상) 150,000원

○ 민간전문가는 정책자문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 역할 수행으로 공동결정·공동책임의 민·관 협치를 실현하지만,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교육청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전문가는 사업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말 현재 ‘2020년도 민간전문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⁴⁸⁾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금번 세출예산안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의 시의회협력 사업비로 민간전문가 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집행부가 시의회협력을 위해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적으로 유사한 국회협력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을 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과 관련해서 의문이라 하겠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금번 세출예산안의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의 경우 그동안의 민

47) 교육청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48) [붙임4] 참고.

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구체인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1) 사업 개요

-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16개 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10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담당부서	위원회명	현재 위원수	2020년 회의개최수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1	대변인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11	1	4,080	4,080
2	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	7	1	2,300	2,300
3	감사관	공익제보위원회	11	2	3,300	3,380
4	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11	2	1,860	1,900
5	감사관	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13	0	0	0
6	총무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7	3	0	0
7	총무과	공적심의위원회	7	9	0	0
8	총무과	기록물평가심의회	5	1	600	1,160
9	총무과	민원조정위원회	9	1	1,820	1,820
10	총무과	보안심사위원회	7	3	0	0
11	총무과	정보공개심의회	7	11	4,720	6,720
12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20	13	12,480	12,480
13	총무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7	3	580	580
14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안전위원회	17	0	8,980	8,980
15	정책안전기획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21	0	7,880	7,380
16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10	1	888	1,776
17	예산담당관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11	3	4,160	4,320
18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10	1	1,860	2,760
19	예산담당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	2	5,780	6,560
20	예산담당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15	3	18,660	18,660
21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	6	23,400	26,400
22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2	4	4,920	5,400
23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12	0	2,100	2,100
24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15	1	8,850	8,850
25	행정관리담당관	법제심의위원회	7	13	720	720
26	행정관리담당관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15	3	6,000	7,000
27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	7	1	2,600	2,600
28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50	14	81,750	101,600
29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14	0	2,880	1,440
30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33	3	21,500	14,800
31	참여협력담당관	학교협동조합민관협의회	9	0	3,320	3,320
32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5	0	2,880	2,880

연번	담당부서	위원회명	현재 위원수	2020년 회의개최수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33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기부위원회	11	0	1,900	3,200
34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7	3	4,800	35,600
35	노사협력담당관	생활임금위원회	7	1	1,460	1,460
36	교육혁신과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5	1	2,880	2,544
37	교육혁신과	혁신학교운영위원회	13	2	5,800	7,400
38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진흥위원회	15	1	4,620	4,620
39	교육혁신과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11	4	7,000	13,680
40	교육혁신과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5	1	2,880	1,500
41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위원회	15	1	2,280	2,280
42	초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평가관리위원회	10	2	300	0
43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9	9	8,600	5,200
44	초등교육과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15	1	2,400	2,880
45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7	2	0	3,400
46	초등교육과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5	1	2,400	2,880
47	중등교육과	교권보호위원회	9	4	3,600	3,600
48	중등교육과	교원양성위원회	4	0	500	500
49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6	1	0	0
50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7	1	0	0
51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15	2	10,600	8,885
52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15	7	28,900	28,900
53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위원회	19	1	1,400	1,700
54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	15	1	3,250	2,200
55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13	1	2,880	0
56	중등교육과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7	1	400	400
57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11	1	3,460	3,460
58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14	1	2,880	2,880
59	평생교육과	문해교육심사위원회	11	3	3,300	3,300
60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10	1	1,000	1,000
6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15	1	0	4,600
6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14	1	6,500	5,760
6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14	1	3,320	2,880
6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5	1	5,200	2,880
65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명존중위원회	8	2	2,880	4,500
66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3	8	5,300	50,400
6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통일교육위원회	11	1	5,200	11,200
6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9	1	5,140	3,320
6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력심의위원회	7	8	12,700	9,040
7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위원회	19	4	18,080	15,550
7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7	11	5,000	17,352
7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7	1	8,420	4,600
7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위원회	15	1	4,500	9,300
74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3	1	2,880	2,880
75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11	0	0	0
76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5	8	23,859	231,440
77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5	1	2,880	2,880
78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급식위원회	15	2	3,900	4,420
79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위원회	15	3	3,500	4,580
8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8	0	1,800	1,120
81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9	0	1,600	1,400
82	학교지원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15	4	2,400	2,400
83	학교지원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13	1	2,000	2,400
84	학교지원과	교명제정심의위원회	9	1	504	2,000
85	학교지원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9	2	900	2,000

연번	담당부서	위원회명	현재 위원수	2020년 회의개최수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86	학교지원과	사학공공성장화위원회	13	1	450	0
87	학교지원과	적정규모교육성추진위원회	11	2	1,470	2,660
88	학교지원과	특성화중학교지정운영위원회	11	1	300	2,000
89	학교지원과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11	3	1,680	2,000
90	학교지원과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9	0	2,880	1,440
91	교육재정과	계약심의위원회	7	0	6,540	8,400
92	교육재정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9	1	15,630	9,500
93	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신청사및연수원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1	1,800	1,800
94	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 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7	0	800	1,560
95	교육시설안전과	개축심의위원회	8	2	0	0
96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15	0	0	2,880
97	교육시설안전과	기술자문위원회	15	7	18,410	18,410
98	교육시설안전과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11	1	0	0
9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11	0	0	0
100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3	6	0	51,480
계					528,781	906,467

- 금번 예산안의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은 9억 6백만원으로 작년 보다 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교육청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2020년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약 2.5회로 교육행정지원센터위원회 등 회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연간 회의 개최 빈도가 2회 미만인 위원회가 54개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년도 보다 7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는바, 교육규제완화위원회처럼 올해 10월 기준으로 단 1회의 회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제 위원회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교육청은 기능면에서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각종 보조금 사업 중 교직원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문제

1) 사업 개요

-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⁴⁹⁾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교육청은 금번 세출예산안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함하여 28개의 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345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33] 각종 보조금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편성액
1	교육급여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	500
2	방과후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185
3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10,176
4	학기중평일급식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305
5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22
6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운영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동주민센터의 임시 보조인력 지원	2
7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900
8	은사와함께하는새내기교사대회(서울교총)	새내기 교사와 선배교원 대상 공연, 특강, 어울림마당	30

49)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편성액
9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서울교총)	교원(유·초·중등)대상으로연구대회운영및우수보고서발간	20
10	어린이날기념사업(전교조서울지부)	어린이용 인권도서 함께 읽기,어린이 민주시민 교육	20
11	학생의날기념사업(전교조서울지부)	청소년대상인문학강의및학생인권주제도서보내기	20
12	장애아동캠프(한교조서울본부)	학교통합학급장애·비장애학생대상자연탐방캠프	17
13	다문화가정학생초청한국역사문화체험(대한교조 서울지부)	다문화가정학생및학부모초청한국경제,문화,역사체험	8
14	불어라책바람(서울교사노조)	책과관련한문화체험행사,작가와와의만남	20
15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서울교사노조)	평화통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 제작 및 학교 배포	15
16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연수(서울교육노조)	지방공무원대상직무분야,전문(소방)분야연수	20
17	찾아가는맞춤형연수(서일노)	세입,계약,급여등맞춤형집합및1:1연수	20
18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과서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과용도서지원	315
19	사립교원 위탁채용 법인 2차 시험경비지원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법인에 대한 제2차 시험 운영비 지원	200
20	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어르신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14,927
21	문해교육거점기관,맞춤형프로그램 운영지원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기회 제공	73
22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기회 제공	1,381
23	장애성인평생교육	장애성인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953
24	평생학습관지정및운영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 커뮤니티 지원	182
25	평생학습협력망구축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170
2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관리	3,560
27	임시이사 파견 법인 법인운영비 지원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보조	160
28	학교밖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해 다문화·탈북, 부적응 학생,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계층 대상의 건전한 전일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150
계			34,551

2) 예산안

(단위 : 원)

연도	단체명	세부내역			비고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2020	서울특별시교원단체 총연합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20,000,000	집행 중	
		은사와함께하는 새내기교사대회	30,000,000	-	11.6. 기준 미교부
		소계	50,000,00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어린이날기념사업	20,000,000	집행 중	
		학생의날기념사업	20,000,000	집행 중	
		소계	40,000,000	집행 중	
	서울교사노동조합	불어라책바람	20,000,000	집행 중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	15,000,000	집행 중	
		소계	35,000,000	-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장애아동캠프	17,300,000	-	11.6. 기준 미교부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다문화가정학생초청 한국역사,문화,안보체험	9,000,000	-	11.6. 기준 미교부	
계		151,300,000	-		
2021	서울특별시교원단체 총연합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20,000,000		
		은사와함께하는 새내기교사대회	30,000,000		
		소계	50,00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어린이날기념사업	20,000,000		
		학생의날기념사업	20,000,000		
		소계	40,000,000		
	서울교사노동조합	불어라책바람	20,000,000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	15,000,000		
		소계	35,000,000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장애아동캠프	17,300,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다문화가정학생초청 한국역사,문화,안보체험	7,500,000			
계		149,800,000			

- 이중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금번 세출예산에는 1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와 관련해서 2020년말 현재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은사와함께하는새내기교사대회’, ‘다문화가정학생초청장애아동캠프’, ‘한국역사,문화,안보체험’ 등의 사업은 11월 6일 기준으로 교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청은 이러한 고려 없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음.
- 예컨대 교육청은 교직원단체의 ‘장애아동캠프’ 등 대면식 행사성 사업에 대해 전례답습적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예산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한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교직원단체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국외연수 편성 문제

1) 사업 개요

- 교육청은 선진 교육정책 체험과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2021년에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국외훈련 등의 국외연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2) 예산안

(단위 : 천원)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국외연수(자기주도적 기획 연수)	105,000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장기국외훈련	120,000
예산담당관	예산관리	지방교육재정운영선진사례연구	8,600
노사협력담당관	근로자인사관리	노무관리담당자직무연수	7,500
노사협력담당관	교직원단체관리	노사관계연수	5,000
계			246,100

- 금번 세출예산안의 지방공무원 대상 국외연수비는 2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외연수 사업은 외국의 선진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여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바.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표34] 본청 '과'별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예산안 (A)	2021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대변인	4,421,267	4,750,346	329,079	7.4
감사관	827,228	858,462	31,234	3.8
총무과	45,295,786	46,958,888	1,663,102	3.7
정책·안전기획관	4,005,782	4,170,223	164,441	4.1
예산담당관	4,801,841,473	4,834,947,285	33,105,812	0.7
행정관리담당관	1,049,455	1,066,065	16,610	1.6
참여협력담당관	130,931,008	133,186,658	2,255,650	1.7
노사협력담당관	122,472,738	449,657,240	327,184,502	267.1
교육혁신과	205,880,043	134,433,601	-71,446,442	-34.7
유아교육과	614,547,159	600,602,987	-13,944,172	-2.3
초등교육과	162,259,908	146,626,926	-15,632,982	-9.6
중등교육과	250,217,550	269,661,168	19,443,618	7.8
평생교육과	28,381,211	30,563,335	2,182,124	7.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95,667,439	76,854,276	-18,813,163	-19.7
진로직업교육과	81,417,168	57,419,699	-23,997,469	-29.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87,667,780	524,143,616	36,475,836	7.5
학교지원과	1,331,898,948	1,421,868,268	89,969,320	6.8
교육재정과	149,952,711	52,836,922	-97,115,789	-64.8
교육시설안전과	199,867,910	134,318,532	-65,549,378	-32.8
계	8,718,602,564	8,924,924,497	206,321,933	2.36

1) 대변인

가) 서울교육정책여론조사(사업별 설명자료 72~76pp)

① 사업 개요

- 금번 세출예산안의 대변인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한 4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서울교육정책여론조사	103,000	-	좌동	103,000	좌동	여론조사예산 신규 편성

-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정책설명및언론홍보활동’ 사업 중 ‘서울교육정책여론조사’로 1억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내년도 대변인 소관의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4억 9천 9백만원)’,⁵⁰⁾ ‘교육정책설명및언론홍보활동(▲9천 1백만원)’, ‘서울교육영상홍보물제작(▲8천 7백만원)’ 등을 증액하면서 ‘서울교육정책여론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이는 교육청의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에 공감되는 면도 있으나, 교육정책의 조정, 교육지표 및 정책방향과 중점과제 수립,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 관리,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의 업무를 정책·안전기획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대변인 보다는 정책·안전기획관에서 동 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업무분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50) 2020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본예산 대비 광고홍보예산은 [붙임5] 참고.

2) 기획조정실

가) 2020년 추가경정예산 감액 사업 중 2020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① 사업 개요

- 기획조정실 사업들 중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 등 20개 사업의 경우,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들을 축소하는 등 각 사업예산을 감액한 바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	86,600	50,000	25,000	36,600	61,600	○ 온라인방식 학술대회 추가 운영
빅데이터분석추진	533,253	470,889	227,453	62,364	305,800	○ ETL 시스템 구축증액 (4.4억원) ○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감액(3.5억원) - 외부데이터 구매 비용 1억원 - 분석 비용 25억원
교육자원청 기본운영비	7,100,826	6,889,279	6,643,451	211,547	457,375	○ 공공요금 등 인상분
분청부서운영비	2,021,152	1,933,608	1,916,488	87,544	104,664	○ 분청 정원 및 팀 증가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	10,381,052	10,016,479	9,785,836	364,573	595,216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증가, 방역예산 편성
교원연구비	31,547,216	28,326,476	27,864,636	3,220,740	3,682,580	○ 교원 수 변동 및 고등학교 교원 포함
사업학교전담교사인건비	3,404,356	3,361,665	3,263,298	42,691	141,058	○ 인건비 상승
유아교육지원 (교실청소용역비)	1,215,000	1,152,000	1,102,000	63,000	113,000	○ 유치원 학급수 증가
일반고교육여량강화	16,715,000	15,185,000	15,147,380	1,530,000	1,567,620	○ 자공고 폐지에 따른 일 반고 증가
장애학생활동지원사 회복무요원인건비	7,666,679	7,596,208	7,090,585	70,471	576,094	○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상승
특수학급운영비	10,440,000	10,091,000	9,347,000	349,000	1,093,000	
혁신학교운영비지원	884,000	416,000	344,400	468,000	539,600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교육지원기관 행정개선활동지원	1,436,064	1,274,822	1,125,615	161,242	310,449	◦ 기본운영비에서 사업성 경비 이관	
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1,904,385	1,787,462	1,628,795	116,923	275,590	◦ 학생배치 및 배정 업무 지원 등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 담금	758,594,097	681,327,729	684,827,888	77,266,368	73,766,209	◦ 요율 인상 (건강보험 등)
	명예퇴 직수당	141,720,000	114,194,000	27,218,630	27,526,000	114,501,370	◦ 교원 1,380명 ◦ 지방공무원 60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역량강화	226,000	186,000	156,000	40,000	70,000	◦ 사업운영 확대	
외국협력기관 방문교육교류	60,000	50,000	23,000	10,000	37,000	◦ 온라인 협력수업 참 가국 방문	
서울교육글로벌컬 나눔사업	76,344	50,790	39,705	25,554	36,639	◦ '21년 사업확대	
학부모학교 교육참여지원	970,160	930,520	12,160	39,640	958,000	◦ 학부모회 지원금 증액 (190만원→200만원)	
공무원단체지원	546,000	516,000	10,000	30,000	536,000		
계	997,528,184	885,805,927	797,799,320	111,722,257	199,728,864		

○ 이와 같은 사업들의 금번 세출예산안 총액은 9,975억 2천 8백만원
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117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들 사업 중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 ‘빅데이터분석추진’, ‘교원
연구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역량강화’, ‘외국협력기관방문교육교
류’, ‘서울교육글로벌컬나눔사업’,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공무원단
체지원’ 등은⁵¹⁾ 건축 재정운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는바,

현재 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코로나19 위기감과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된 상황으로 동
사업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가 감액되었던 점을 고려
할 경우 동 사업들의 증액 편성은 재원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1) 인건비 및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 사업은 제외

나) 인건비(사업별 설명자료 392~402pp, 567p, 1985~1996pp)

① 사업 개요

- 금번 예산안의 인건비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고, ‘교육공무직인건비’ 신설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

②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1 예산안
전체 예산		9,151,267	9,380,315	10,084,661	9,741,994
인건비	비율	60.0%	59.6%	60.2%	65.5%
	합계	5,486,407	5,587,911	6,070,501	6,378,810
	공무원인건비	4,116,147	4,138,797	4,369,103	4,391,665
	근로자인건비	255,067	310,492	358,101	692,763
	사립학교교직원	1,115,193	1,138,622	1,343,297	1,294,382

[표35] 인건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육부(인건비 산정액)				교육청(본예산)				
		2021	2020	증감	증감률	2021	2020	증감	증감률	
공 립	교 원	보수	총액인건비 대상 아님				2,978,893	3,057,771	△78,878	△2.6%
		법정부담금 등					849,219	748,770	100,449	13.4%
		소계					3,828,112	3,806,541	21,571	0.6%
	교 육 전 문 직	보수	66,145	62,568	3,577	5.7%	50,540	47,859	2,681	5.6%
		법정부담금 등					9,213	9,832	△619	△6.3%
		소계					66,145	62,568	3,577	5.7%
	지 방 공 무 원	보수	557,083	536,201	20,882	3.9%	407,171	413,204	△6,033	△1.5%
		법정부담금 등					96,628	91,667	4,961	5.4%
		소계					557,083	536,201	20,882	3.9%
	공무원인건비		623,228	598,769	24,459	4.1%	4,391,664	4,369,103	22,561	0.5%
	계 약 제 교 원	보수	총액인건비 대상 아님				222,227	218,877	3,350	1.5%
		법정부담금 등					42,547	45,525	△2,978	△6.5%
		소계					264,774	264,402	372	0.1%

구분		교육부(인건비 산정액)				교육청(본예산)			
		2021	2020	증감	증감률	2021	2020	증감	증감률
계 약 제 근 로 자	지방공무원대체 인건비	지방공무원 산정액에 포함				11,616	10,397	1,219	11.7%
	교육공무직원인 건비	교육공무직원세부사업으로 전환				0	78,118	△78,118	△100.0%
	장애인고용의무 제 운영 소계	인건비 산정대상 아님				11,556	5,183	6,373	123.0%
	소계					23,172	93,698	△70,526	△75.3%
교 육 공 무 직 원	통합인건비					345,561	0	345,561	순증
	처우개선비					36,880	0	36,880	순증
	행정기관교육공 무직원	497,369	442,410	54,959	12.4%	12,859	0	12,859	순증
	맞춤형복지비					9,516	0	9,516	순증
	소계	497,369	442,410	54,959	12.4%	404,816	0	404,816	순증
근로자인건비		497,369	442,410	54,959	12.4%	692,762	358,100	334,662	93.5%
사 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무직원인건비	104,163	101,930	2,233	2.2%	93,827	97,132	△3,305	△3.4%
	교원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아님				1,200,555	1,246,165	△45,610	△3.7%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04,163	101,930	2,233	2.2%	1,294,382	1,343,297	△48,915	△3.6%
합계		1,224,760	1,143,109	81,651	7.1%	6,378,808	6,070,500	308,308	5.1%

- 금번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 명예퇴직 인원 증가,⁵²⁾ 생활임금 상승분 등의 상승 요인이 반영되어 전년도 보다 3,083억 8백만원이 증가한 6조 3,788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5.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가 4조 3,916억 6천 5백만원, 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자인건비가 6,927억 6천 2백만원,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가 1조 2,943억 8천 2백만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2018~2021년 명예퇴직 예산 편성 내역

구분(직종)		2021년도 편성액	2020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합계	인원	1,765	1,593	1,650	1,440
	금액	168,800	150,047	161,765	135,634
공립교원	인원	1,380	1,261	1,286	1,090
	금액	138,000	123,595	132,214	108,752
사립교원	인원	385	332	364	350
	금액	30,800	26,452	29,551	26,882

[표36] 2018~2020년 인건비 결산 내역 및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2018	정규직	교원인건비	3,735,111	3,639,638	95,473	2.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2,236	49,052	3,184	6.1%
		지방공무원인건비	474,226	456,446	17,780	3.7%
		소계	4,261,573	4,145,136	116,437	2.7%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47,112	223,306	23,806	9.6%
		계약제직원인건비	13,677	9,247	4,430	32.4%
		소계	260,789	232,553	28,236	10.8%
	공립 계			4,522,362	4,377,689	144,673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120,833	1,104,396	16,437	1.5%	
공사립 총계			5,643,195	5,482,085	161,110	2.9%
2019	정규직	교원인건비	3,822,744	3,798,309	24,435	0.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5,015	52,274	2,741	5.0%
		지방공무원인건비	488,604	470,214	18,390	3.8%
		소계	4,366,363	4,320,797	45,566	1.0%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46,410	237,068	9,342	3.8%
		계약제직원인건비	84,119	80,505	3,614	4.3%
		소계	330,529	317,573	12,956	3.9%
	공립 계			4,696,892	4,638,370	58,522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159,859	1,151,465	8,394	0.7%	
공사립 총계			5,856,751	5,789,835	66,916	1.1%
2020 (예상)	정규직	교원인건비	3,697,265	3,670,233	27,032	0.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8,387	56,534	1,853	3.2%
		지방공무원인건비	505,274	485,855	19,419	3.8%
		소계	4,260,926	4,212,622	48,304	1.1%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66,852	256,723	10,129	3.8%
		계약제직원인건비	94,387	91,918	2,469	2.6%
		소계	361,239	348,641	12,598	3.5%
	공립 계			4,622,165	4,561,263	60,902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371,666	1,351,149	20,517	1.5%	
공사립 총계			5,993,831	5,912,412	81,419	1.4%

○ 이중 교육공무직인건비와 관련해서 금번 세출예산안부터 교육공무직원 26개 직종에 대한 통합인건비 세부사업이 신설되어 기존에 학교운영비 및 개별사업비로 산재되어 있던 교육공무직인건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는 예산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라 하겠음.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2020년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임금교섭이(2020.10.14.~10.30.) 제3차에 걸쳐 실무교섭(직종공통)이 진행되었고, 2020년 11월 12일부터는 실무교섭에 직종별 요구사항도 포함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건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전문인력 등 공통의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⁵³⁾ 대한 보충교섭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액이 발생할 수 있는바,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37] 2020년도 교육공무직 인력운영 현황(2020.4.1기준)⁵⁴⁾

(단위: 명, %)

구분	무기계약 (A)	기간제				총 인원 (F=A+E)	무기계약 전환률 (G=A/F-B-D)×100	
		1년미만 (기간미도래) (B)	1년이상 (전환대상) (C)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D)	소계 (E=B+C+D)			
공립	유	1,479	69	2	44	115	1,594	99.9
	초	8,660	308	37	2,527	2,872	11,532	99.6
	중	3,697	122	18	427	567	4,264	99.5
	고	1,283	99	53	296	448	1,731	96.0
	특수	318	9	3	81	93	411	99.1
	각종	42	6		11	17	59	100
	기관	626	87	7	287	381	1,007	98.9
	계	16,105	700	120	3,673	4,493	20,598	99.3
사립	초	288	48	134	166	348	636	68.2
	중	595	37	262	157	456	1,051	69.4
	고	1,182	124	589	443	1,156	2,338	66.7
	특수	328	17	94	41	152	480	77.7
	각종	24	1	16	14	31	55	60.0
	계	2,417	227	1,095	821	2,143	4,560	68.8
합 계	18,522	927	1,215	4,494	6,636	25,158	93.8	

53) 교육공무직노조 단체교섭 현황 등은 [붙임 6] 참고.

54)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만55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등

[표38] 2018~2021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내역(2020.10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본급	유형1	1,834,140원	1,867,150원 /1,967,150원	2,023,000원	2020년 집단임금교섭 진행 중
	유형2	1,642,710원	1,672,270원 /1,772,270원	1,823,000원	
	인상률	2.6%	1.8%/5.6% (교통보조비 기본급에 포함)	2.8%	
수당	근속수당	3만(근속1년)~ 60만(근속20년)	3만(근속1년)~60만(근속20년) 3만(근속1년)~60만(근속20년)	3.5만(근속1년)~ 70만(근속20년)	
	명절휴가비	연간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간 90만원			
직무 관련 수당	면허가산수당(영양사)	매월 83,500원	매월 92,000원		
	특수업무수당(사서)	매월 20,000원(자격증 소지자)			
	위험근무수당(조리종사원)	매월 50,000원			
	직무관리수당(영양사)	매월 50,000원			
	조리자격가산수당(조리사)	기본급의 5%			
	행정업무책임수당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	매월 30,000원		
	직무수당(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매월 20,000원			
복리비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직계존비속 2만원/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이하 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별 467,080원 한도	분기별 468,300원 한도	분기별 469,400원 한도	
	급식비	매월 130,000원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일급 80,000원	시급 10,300원 일급 82,400원	시급 10,850원 일급 86,800원	시급 11,010원 일급 88,080원

- ※ 임금유형1: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아교육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돌봄전담사(전일제), 돌봄전담사(시간제), 특수에듀케어 강사, 전문상담사, 학부모상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사서(자격소지자), 시설기동보수반
- ※ 임금유형2: 교육실무사(교무), 교육실무사(과학), 교육실무사(전산), 교육실무사(실습), 교육실무사(특수), 유치원교육실무 사, 사서(자격미소지자), 교무행정지원사, 통학차량실무사, 시설관리원
- ※ 교통보조비는 2016년부터 매월 6만원 지급하다가 2019.10월부터 매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포함(단 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직종만 매월 10만원 지급)

다) 입학준비금(사업별 설명자료 508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구입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3,327,970	-	좌동	33,327,970	좌동	◦ 2021년 신규사업
입학준비금	21,204,700	-	좌동	21,204,700	좌동	
입학준비금 (서울시전입금)	12,123,270	-	좌동	12,123,270	좌동	

- 금번 세출예산안에는 서울시전입금을 포함하여 333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교육감이 지난 9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학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후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 하겠음.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동 사업비의 지원범위와 지급방법,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교육청이 동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동 사업비 편성에 앞서 관련 사항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조례 제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학부모관련사업(사업별 설명자료 549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586,984	2,742,518	1,018,761	△155,534	1,568,223	
단위학교학부모회지원	708,510	721,480	43,150	△12,970	665,360	○ 단설유치원 학부모회 운영비를 학교기본 운영비로 전환
서울교육공론화사업	409,040	361,864	좌동	47,176	좌동	○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사업 통합
원탁운영	-	102,440	1,073	△102,440	△1,073	○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사업 폐지
전환기학부모교육운영	335,542	337,162	좌동	△1,620	좌동	○ 인건비 감액
학부모교육지원	137,392	263,032	좌동	△125,640	좌동	○ 학부모리더교육 학부모지원센터운영으로 분리
학부모학교 교육참여지원	970,160	930,520	12,160	39,640	958,000	○ 학부모회 지원금 증액 (190만원→200만원)
학조부모교육운영	26,340	26,020	320	320	26,020	

- 금번 세출예산안에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을 통해 전년도 보다 1억 5천 5백만원이 감소한 25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중 ‘서울교육공론화사업’과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학조부모교육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보다 각각 4천 7백만원과 3천 9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표39] 2019~2021 학부모관련 사업 예산 편성내역

사업내역	2019년	2020년(4차 추경)	2021년
총 계	2,591,056	1,078,761	2,586,984
단위학교학부모회지원	786,600	43,150	708,510
서울교육공론화사업	400,960	361,864	409,040
원탁운영	120,200	1,073	-
전환기학부모교육운영	237,178	337,162	335,542
학부모교육지원	-	263,032	137,392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946,420	12,160	970,160
학조부모교육운영	5,988	320	26,340
학부모교육 콘텐츠개발	29,160	-	-
학부모대학 운영	64,550	-	-

- 이중 ‘서울교육공론화사업’의 경우,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토론 등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의 도입여부, 방향성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임.

그러나 이미 교육청은 이러한 정책 검증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위해서 이와 유사한 ‘서울교육정책여론조사’(사업별 설명자료 72p)와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사업별 설명자료 259p)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유사 사업들 간의 통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더욱이 서울교육공론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공론화위탁비(2억 2천만원)’와 ‘참여단온라인토론위탁비(1억 9백만원)’라는 점과⁵⁵⁾ 교육청이 상설, 비상

55)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2020년 서울교육 공론화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공론화위탁비’의 경우 교육청이 전문 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비’보다는 ‘용역비’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생각됨.

설의 각종 지원단, 평가단, 센터, 협의회 등의⁵⁶⁾ 기구나 조직을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구나 사업들을 통·폐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예산을 중복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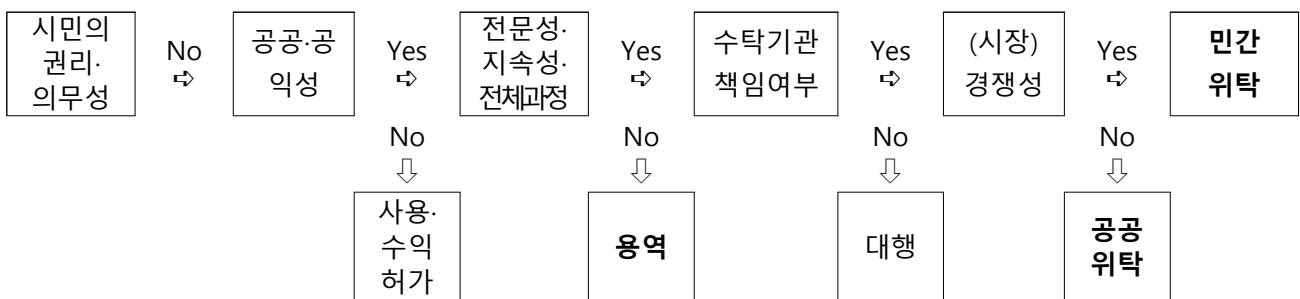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축 재정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외부(민간전문가, 시민, 학생, 학부모 등)참여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민간위탁과 유사개념(공공위탁, 용역)구분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서울특별시, 2014. 8.), 2016 3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6) 참고)

순	판단 기준	분석	구분
1	■ 전문성, 지속적 사무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인가?	- 전문성 O·지속성 O → 민간위탁 검토 - 전문성 X·지속성 X → 용역	용역
2	■ 전체적 사무 -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인가?	- 전체적 O → 민간위탁 검토 - 부수적·일부 → 용역	
3	■ 경쟁 가능성 - 수탁 기관 선정 시 경쟁 원리가 적용 가능한가(수탁 기관이 공공기관인가)?	-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 검토 - 경쟁원리 불가 → 공공위탁 (법정위탁, 지정, 고시위탁)	공공위탁

※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



56) 각종 지원단 등 현황 [붙임기] 참고.

2) 교육정책국

가) STEAM교육내실화지원(사업별 설명자료 618p)

① 사업 개요

- STEAM교육내실화지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체험·탐구 중심의 융합과학인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3,700	4,260	14,260	9,440	△560	
STEAM교육과정운영	13,700	4,260	14,260	9,440	△560	연구학교 운영비 증액

-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9백만원 증가한 1천 4백만원이 편성됨. 증액의 주된 원인은 연구학교 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초·중등 학교교육력제고팀 및 STEAM 컨설팅단 운영과 창의 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1천만원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 그러나 교육청은 이미 'STEAM교육 확산'을 위해 STEAM교육 관련 선도학교(창의융합선도학교)를 30개교 운영하고 있는바, 기존의 선도학교 이외에 별도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 무엇인지 의문임.

[표40] 창의융합선도학교운영 현황

(단위: 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3	9	8	30

○ 더욱이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제출한 연구학교 계획서에 따르면, 연구학교 운영이 STEAM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AI(인공지능)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교육청이 이미 2020년도부터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시범학교, SW선도학교 등 AI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시, 동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41]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과제

	창의융합적 AI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연구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련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인적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관련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AI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도 형성을 위한 학생 대상 특강 실시 ◆ AI 관련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관련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기자재 구비 ▶AI 관련 교육 운영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체제 구축
	창의융합적 AI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련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적 교육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관련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 교육과정 체계 분석 및 개선안 마련 ▶융합교과에서 AI 교육을 위한 과목 분석 및 교육과정 마련 ◆ AI 관련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교과에서의 AI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융합 교과에서의 AI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창의융합적 AI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적용 및 보급
연구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련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교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융합 교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 AI 관련 교육을 위한 창의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프로그램의 결과 분석 및 보완책 마련 ▶AI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보급

나) 생태전환교육내실화(사업별 설명자료 662p)

① 사업 개요

- 생태전환교육내실화는 초·중등학교의 생태환경 교육을 혁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생태적 전환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태문명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추구하는 사업임.

교육청은 2020년에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생태전환교육과 기존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279,030	1,208,100	좌동	1,271,730	좌동	
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921,470	460,400	좌동	461,070	좌동	◦ 생태전환중점학교 및 교사지원단 운영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1,201,710	707,300	좌동	695,210	좌동	◦ 생태전환교육활동 확대 추진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155,850	40,400	좌동	115,450	좌동	◦ 생태전환교육 실천 문화 확산, 농촌유학, 학급활동 운영

- 금번 예산안의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22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생태전환중점학교 및 교사지원단 운영비로 4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사업에서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대상 학교를 300개교로 확대하면서 6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또한 ‘생태전환실천문화 확산’ 사업에서는 초·중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지역에 농촌유학을 갈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신설하면서 1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부강사 활용하는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대상 학교 확대 문제

-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사업 중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환경 관련 외부 강사들이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생태환경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임.
-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사업 중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운영’은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중심으로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것이며, ‘생태전환리빙랩’은 외부 강사들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표42]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운영’ 현황

(단위: 개교)

상반기(6월~8월)	하반기(9~10월)	전체
56	62	118

[표43] 2020년 ‘생태전환리빙랩’ 운영 현황

(단위: 개교)

참여 학교수			주제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우리마을환경 바로알기, 적정기술과 생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일인발전시대가 열린다, 메이커교육 등
26	22	48	

- 교육청은 2021년에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사업 대상 학교를 300 개교로 확대(2020년 166개교)하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은 정규 수업시간에 민간업체의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바, 민간업체 외부 강사의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 대상 학교를 134개교 추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교육청은 2020년 운영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 수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외부 강사의 정규 교과 시간의 참여가 생태전환 교육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 동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농촌유학’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효성 문제

- ‘생태전환실천문화 확산’ 사업에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이상 전남지역(순천, 담양, 곡성, 화순, 강진 등)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농촌유학’ 사업이 신규로 편성됨.
- 운영은 3가지 유형으로 첫째, ‘홈스테이형’은 학생이 당해 지역 농가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둘째, ‘가족체류형’은 학생 및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센터형’은 학생이 당해 지역 센터에서 거주하는 것임.
- 그리고 유학비의 40%(서울시교육청 20%, 전남교육청 2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학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표44] 농촌유학 유형 및 지원내용

유형	특성	지원 내용
홈스테이형	학생이 당해 지역 농가에서 거주	·유학비 및 방과후학습비 ·주거시설 제공 ·교내 방과후 돌봄(학습) 지원 ·주말 프로그램 운영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가족체류형	학생 및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에서 함께 생활	
센터형	학생이 당해 지역 센터에서 기거	

- 학생들이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하겠으나, ‘홈스테이형’이나 ‘센터형’과 같이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혼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 ‘농촌유학 신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농촌유학 시기 및 기간, 체류 방법 등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한바, 동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선불리 예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⁵⁷⁾
- 한편, 이러한 농촌체험활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도 의문임. 생태전환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간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행동 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
- 즉 생태전환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공동체들이 생태전환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및 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오히려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음.

57)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하는 2021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설문기간: 2020.11.3.(화)~11.5(목), 응답인원: 16,127명. 동 설문조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농촌유학 보내는 것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으며, 이미 농촌유학을 보낸다는 전제 하에 단순히 장소나 유학기간 등에 대한 설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참고로 농촌유학 관련 정보를 받고 싶은 경우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 16,127명 중 1,537명만이 응답하여 응답율이 9.55%에 불과했다는 점을 통해 학부모들이 동 설문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학교를 생태 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기획·추진해야 할 것 인바, 동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 초·중학교교과용도서(사업별 설명자료 681p)

① 사업 개요

- 초·중학교교과용도서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인정도서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9,003,394	57,816,016	68,645,018	1,187,378	△9,641,624	
관외출장여비	2,400	2,400	좌동	-	좌동	
디지털교과서	-	1,492,200	좌동	△1,492,200	좌동	◦ 세부사업 및 자원변경 (일반재원->특교)
업무관계지협의회	2,080	2,080	좌동	-	좌동	
인정도서관리	3,200	-	좌동	3,200	좌동	◦ 신규사업(인정취소)
중학교교과용도서	21,568,060	20,193,852	24,147,012	1,374,208	△2,578,952	◦ 지원단가 증가 (86,110원→93,140원)
지역화교과서인쇄	303,676	303,676	좌동	-	좌동	
초등학교교과용도서	37,123,978	35,821,808	42,697,650	1,302,170	△5,573,672	◦ 지원단가 증가 (79,780원→83,770원)

-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천 7백만원 증액된 590억 3백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교과용도서 및 중학교교과용도서 예산이 지원 단가 증가로 각각 13억 2백만원과 13억 7천 4백만원 증액되었고, 디지털교과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14억 9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초등학교교과용도서’ 및 ‘중학교교과용도서’는 서울시 전체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교과용도서’ 예산은 371억 2천 4백만원, ‘중학교교과용도서’ 예산은 215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중학교교과용도서’ 및 ‘초등학교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은 ‘재학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과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재학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표45] 중학교교과용도서 예산 세부 내역

· 운영비 - 재학생 및 교사		21,520,371	천원
- 중학교용(학생)	$93,140\text{원} \times 212,216\text{명} \times 80\%$	= 15,812,639	천원
- 중학교용(교사)	$93,140\text{원} \times 18,838\text{명}$	= 1,754,572	천원
- 중학교용(선금)	$93,140\text{원} \times 212,216\text{명} \times 20\%$	= 3,953,16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전입생		47,689	천원
- 공립중(전입생)	$93,140\text{원} \times 3,647\text{명} \times 10\%$	= 33,969	천원
- 사립중(전입생)	$93,140\text{원} \times 1,473\text{명} \times 10\%$	= 13,720	천원

[표46] 초등학교교과용도서 예산 세부 내역

· 운영비 -재학생 및 교사		36,953,279	천원
- 국정교과서조달수수료	$34,132,275,000\text{원} \times 0.4\%$	= 136,530	천원
- 초등학교용(학생)	$83,770\text{원} \times 410,400\text{명} \times 80\%$	= 27,503,367	천원
- 초등학교용(교사)	$83,770\text{원} \times 29,098\text{명}$	= 2,437,540	천원
- 초등학교용(선금)	$83,770\text{원} \times 410,400\text{명} \times 20\%$	= 6,875,842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전입생		170,699	천원
- 공립초(전입생)	$83,770\text{원} \times 19,525\text{명} \times 10\%$	= 163,561	천원
- 사립초(전입생)	$83,770\text{원} \times 852\text{명} \times 10\%$	= 7,138	천원

- 이 중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의 경우 2018년에는 평균 불용액이 73.4%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에는 예산액 2억 2천 6백만원 중 1억 8천 9백만원(83.5%)을 운영비로 전용하였고, 2020년에도 불용액이 60.3%에 이를 예정임.

[표47] 2018년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초등학교	공립	153,375	25,935	127,440	83.1
	사립	6,559	89	6,469	98.6
중학교	공립	399,160	6,415	242,744	60.8
	사립	152,971	6,930	146,040	95.5

[표48] 2019년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증	감(△)
전입생교과용도서	226,000	188,864	188,864
운영비	0	188,864	0
학교회계전출금	226,000	0	188,864

[표49] 2020년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본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중학교전입생교과용도서구입비	27,197	27,197	16,585	10,612
초등학교전입생교과용도서구입비	91,832	91,832	30,612	61,220
합계	119,029	119,029	47,196	71,833

- 이와 같이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은 매년 편성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또는 전용되고 있으나, 교육청은 2021년 예산편성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⁵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8) 교과용도서 단가 X 3년간 전입생 평균수 X 10%

- 이는 전년도 재학생 교과용도서가 과다하게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전례 답습적으로 재학생 교과용도서 예산과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것임.
- 교육청은 올해에도 교과용도서 예산을 과거 교과용도서 불용율 및 재고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한바, 현재의 교과용도서 재고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라)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799p)

① 사업 개요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은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현재 교육청은 2017년에 2개 유치원(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2018년에 2개 유치원(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등 총 4개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860,000	2,404,320	760,970	455,680	2,099,030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운영 지원	2,860,000	2,404,320	760,970	455,680	2,099,030	°'21년도 공영형 유치원 확대 운영 (4개월 →5개월)

-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천 6백만원 증액된 28억 6천만원이 편성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의 혁신 모델임.

동 사업의 대상 유치원 선정은 연중 상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자격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함. 또한 법인 전환 이후에는 법인이 사 '3분의 1 이상'을⁵⁹⁾ 개방이사로 교체·선임해야 하고 법인 전환 시 수익용기본재산을⁶⁰⁾ 출연해야 함.

-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현재 동 사업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는 것이 상황이며, 2019년부터 기존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개원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9년부터 공영형사립유치원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에 공영형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2억 9천만원에 이르렀음.
-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도 동 사업의 추가 선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추경을 통해 16억 4천 3백만원을 감액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 사업예산 42억 9천만원 중 23억 9천 5백만원이 불용 처리될 예정으로(불용율 56%)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59) 2020년에 개방이사 '과반수 이상' 조건이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됨. 2017년, 2018년 선정된 4개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선정 당시 조건대로 '과반수 이상' 개방이사 조건이 기존대로 적용됨.

60)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표50] 2020년 공영형사립유치원 예산 집행 현황

(기준: 2020.11.06. 단위: 천원)

'20 예산현액					집행(예정)액 (F)	불용예상액 (G=E-F)
명시이월액 (A)	'20년도			총액 (E=A+D)		
	기정예산 (B)	추경 증감 (C)	추경 예산 (D=B-C)			
3,528,884	2,404,320	△1,643,350	760,970	4,289,854	1,894,494	2,395,36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에 또다시 공영형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공영형사립유치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 문제 등은 상위법(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추가 지정은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1개월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 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국외연수 및 교류 - (초)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 초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 중등교원연수지원(서울연구년제운영), (중)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사업별 설명자료 877p, 884p, 1,041p, 1168p)

① 사업 개요

○ 초등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중장기 관점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과정 담당자가 교육 선진국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임.

‘초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운영)’ 및 ‘중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운영)’ 사업은 각각 15명의 초·중등교사가 특별연수 및 개인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임.

‘중등 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는 제2외국어교원(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수업,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해당국가 직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00	4,000	1,220	-	2,780	
국외교육과정실태 조사연수(초)	4,000	4,000	1,220	-	2,780	
계	76,500	76,600	좌동	△100	좌동	
초등교원연수지원 (서울교육연구년제)	76,500	76,600	좌동	△100	좌동	◦기타운영수당 감축
계	76,550	76,800	66,800	△250	△9,750	
중등교원연수지원 (서울교육연구년제)	76,550	76,800	66,800	△250	△9,750	◦연수대상자선발 심사수당 감액
계	16,000	16,000	좌동	-	16,000	
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	16,000	16,000	좌동	-	16,000	

- 초등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초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 및 중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 사업도 전년도 본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중등 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년 초등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 중에 1차 연기되었고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제4차 추경을 통해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또한 중등 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전면 취소된 상황이며, 초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 및 중등교원연수지원(서울교육연구년제) 사업 중 국외연수 관련 예산은 국내연수로 대체되었음.

- 이와 같이 2020년 교육정책국의 국외 연수와 관련된 사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전면 취소되거나 국내연수로 대체되었는바,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사업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야 할 만큼 동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예산 편성에서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있음.

[표51] 2021년 교육정책국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액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00	4,000	1,220	-	2,780			
고사시행	시험장 학교운영비	4,392,000	3,719,600	6,167,000	672,400	△1,805,000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장 규모 확대	
계	507,080	-	좌동	507,080	좌동			
원격 수업 지원	블렌디드개인 맞춤형 수업모형개발	81,750	-	좌동	81,750	좌동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블렌디드수업 사례나눔	89,320	-	좌동	89,320	좌동		
	원격교육네트 워크 구축운영	336,010	-	좌동	336,010	좌동		

- 이처럼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을 전제로 국외 연수 및 국제교류 예산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 기관 내 정책 충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2021년 세부 사업들이 서로 일관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임.

바) 초·중등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959p, 1279p)

① 사업 개요

- 기초학력향상지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 학습(3R: 읽기, 쓰기, 셈하기) 과 교과 학습에서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부진에 대한 심리·정서적 요인을 파악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초등	계	11,580,474	3,282,752	3,031,983	8,297,722	8,548,491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145,174	-	좌동	145,174	좌동	무기계약직 인건비
	초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	7,364,280	-	좌동	7,364,280	좌동	공립초 562교 전체 초1~2학년 전면 시 행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학년제 운영	670,500	557,100	957,100	113,400	△286,600	초2 집중학년제 확 대(30%→50%)
	학습상담운영	3,400,520	2,725,652	2,074,883	674,868	1,325,637	지역학습도움센터 확대
중등	계	6,280,800	4,585,350	4,081,566	1,695,450	2,199,234	
	단위학교기본학력 책임지도제	2,316,000	3,984,750	3,480,966	△1,668,750	△1,164,966	협력교사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기초학력협력교사 지원사업	3,848,400	-	좌동	3,848,400	좌동	신규사업
	사업홍보	-	40,000	좌동	△40,000	좌동	예산 절감
	역량강화지원	52,800	80,000	좌동	△27,200	좌동	예산 절감
	지원체제구축및위 크숍	63,600	165,600	좌동	△102,000	좌동	예산 절감
	학습상담지원	-	315,000	좌동	△315,000	좌동	단위학교기본학력 책임지도제에 합산

- 초등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11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중등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9천 5백만원 증가된 62억 8천 1백만이 편성됨.

초등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된 주된 원인은 ‘초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73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⁶¹⁾ 중등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된 주된 원인도 ‘기초학력협력교사 지원사업’ 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38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력강사’ 규모 및 운영 기간 문제

- 초등 기초학력지원 사업 중 ‘초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체 공립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 수업시간(주당 2시간)에 협력강사가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실 내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 797명에게 7.5개월 동안 시간당 22,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표52] 2021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사업 예산

· 학교회계전출금	7,364,280	천원
- 목적사업비(강사수당)	22,000원×14시간×4주×7.5개월×797명 =	7,364,280 천원

- 중등 기초학력지원 사업 중 ‘기초학력교사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 시간에 협력강사를 배치하여 교실 내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로 공·사립은 1천만원, 국립은 4백2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임.

61) 초등의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이나 2020년에 이미 학교기타운영비 ‘기초학력책임지도 제운영’ 사업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협력강사 사업을 운영함(2020년에 협력강사 사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250개교임).

[표53] 2021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사업 예산

· 전출금등			8,400	천원
- 국립	4,200,000원 X 2교	=	8,4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8,400	천원
- 공립	10,000,000원 X 275교	=	2,750,000	천원
- 사립	10,000,000원 X 109교	=	1,090,000	천원

○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학습 초기 단계인 초1~2학년, 중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019년 3월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의련수렴 조사(전국 4,246초등학교, 54,103학급) 결과에 따르면,

보조인력을 희망하는 학교 비율은 전체 응답 학교 중(3,427개교) 46.7%로 나타난바,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특히 이미 ‘1수업 2교사제’ 방식으로 협력강사가 정규교사와 함께 수업을 시행한 사례 결과들을 보면, ‘1수업 2교사제’ 방식의 수업이 실제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강사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⁶²⁾

교육청은 협력강사를 수업에 투입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지도 경험 등의 전문성을 갖춘 약 1,500여명(초등 797명, 중등 772명)의 협력강사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2) 허주(2019). 1수업2교사제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을 통한 교사협력 방안 탐색: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학연구, 21(1), 57-79: 1수업2교사제에 참여한 교사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1수업2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역할 및 책임의 모호성’, ‘운영 및 협력 방법의 미숙’을 꼽음.

임종헌 외(2017).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향상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889-918: 1수업2교사제에 참여한 교사와 보조강사의 면담결과 교사들의 불성실함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1수업2교사제가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기 연구 이외에 1수업2교사제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도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의 경우 학교 및 담임교사의 강한 동기부여와 협력강사의 교직경험 및 학습부진아 관련 지도 경험이 있었음.

- 그러나 현재 교육청이 제시한 협력강사에 대한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자격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의 ‘강사’ 기준에 따르겠다고만 밝히고, 그 외 전문성 있는 협력강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표54]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중 ‘강사’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학력 문제는 담당 교사가 연중 지도하면서 그 변화 추이를 꾸준히 관찰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학교 내 모든 교사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협력강사가 주당 2~4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인구감소로 인해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보장 문제를 협력강사의 지원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문성 있는 교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협력강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은 기존 협력강사를 통한 ‘1수업 2교사제’ 사례들을 면밀히 성과 분석 한 이후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982p)

① 사업 개요

-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학년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을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기본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초등학교의 공교육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726,240	5,507,600	4,821,500	△781,360	△95,260	
안성맞춤교육과정 지원네트워크 운영	669,240	-	좌동	669,240	좌동	신규 사업
안성맞춤교육과정 놀이환경조성	4,057,000	5,437,760	4,751,660	△1,380,760	△694,660	1,2학년 교실환경개선사업 지원 폐지
놀이활성화교원연수	-	19,840	좌동	△19,840	좌동	사업 폐지
놀이활성화학부모연수	-	50,000	좌동	△50,000	좌동	사업 폐지

-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천 1백만원 감액된 47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안성맞춤교육과정지원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6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성맞춤교육과정 놀이환경조성’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안성맞춤교육과정지원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저학년 학생들의 한글교육, 놀이중심 교육과정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해 초등학교 1,2학

년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바,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수업과 관련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교육청은 「기초학력향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교실혁신지원 운영」 사업 등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 왔는바, 동 사업에서 중복하여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동아리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표57] 2021년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 내 교사 네트워크 관련 예산

<p>「초2 집중학년제」 지원단 운영 지원</p> <p>- 소요예산: 98,900천원</p> <p>(동부, 중부,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광복) : 32,900천원 (서부, 남부, 북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66,000천원</p>

[표58] 2021년 ‘우리가꿈꾸는교실’ 사업 내 교사 네트워크 관련 예산

<p>「우리가꿈꾸는교실」 교실혁신지원 운영</p> <p>- 소요예산: 105,650천원</p> <p>운영비: 103,950천원 (교육지원청 배분) 업무추진비: 1,700천원 (교육지원청 배분)</p>

- 특히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도입기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학교 간 교사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했을 수 있으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 내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5년차에 교사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동 사업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바,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교원역량성장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032p)

① 사업 개요

- 교원역량성장지원은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수업평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하고 교육지원청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수업나눔 활동 및 연구결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14,040	989,910	905,850	△275,870	△191,810	
수업평가나눔교사단	714,040	947,490	863,430	△233,450	△149,390	정책정비
교원성장 수업코칭운영	-	42,420	좌동	△42,420	좌동	

-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천 6백만원 감액된 7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2019년에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 4천만원이 편성된 이후 2019년 추가경정예산, 2020년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이는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2020년 교사단 수는 2,085명에 이르고 있음.
- 2021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7천 5백만원 감액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사단 수를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음.

[표59] 2020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수

(2020.11. 기준)

연번	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사단(명)	고등학교 교사단(명)	합계(명)
1	동부	200	16	216
2	서부	112	46	158
3	남부	91	31	122
4	북부	143	63	206
5	중부	55	86	141
6	강동송파	136	77	213
7	강서양천	162	81	243
8	강남서초	187	76	263
9	동작관악	163	90	253
10	성동광진	57	64	121
11	성북강북	131	18	149
합계		1,437	648	2,085

- 동 사업을 통해 중등 교사들이 수업혁신 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업 전문성을 신장해 가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교육청은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운영’⁶³⁾, ‘학교안 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⁶⁴⁾, ‘평가개선장학지원’⁶⁵⁾ 등 교원들의 수업·평가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에 교원들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관련 연수 및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바, 서울시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수(38,683명) 대비 5.2%에 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7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등교육과에 원격교육팀을 신설하여 2021년부터 원격수업 관련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기로 하였음(‘원격교육지원’ 사업 예산: 5억 7백만원).

63) 교육연구정보원, 2021년 예산안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운영’ 사업으로 7억 8천만원 편성
 64) 교육혁신과, 2021년 예산안 ‘학교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7천 3백만원 편성
 65) 중등교육과, 2021년 예산안 ‘평가개선장학지원’ 사업으로 2억 1천 4백만원 편성

[표60] 2021년 원격교육지원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07,080	-	좌동	507,080	좌동	
블렌디드개인맞춤형 수업모형개발	81,750	-	좌동	81,750	좌동	신규사업
블렌디드수업사례나눔	89,320	-	좌동	89,320	좌동	신규사업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336,010	-	좌동	336,010	좌동	신규사업

- 특히 원격교육지원 사업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⁶⁶⁾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수업 모형을 강의, 자료집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에서는 교사 약 100여명을 ‘에듀테크선도교사’로 모집하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이 교사들이 에듀테크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신규 사업인 원격교육지원은 수업 방식만 달라졌을 뿐 교사들의 교육과정,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사업과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은 등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은 대면 수업에서의 수업 전문성 문제를 넘어 블렌디드 러닝 등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수업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2020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활동 역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수업 모형 개발 및 공유에 초점을 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66)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는 것으로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를 의미함.

[표61] 2020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주요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렌디드수업 설계,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함께하는 미래교실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블렌디드(원격) 수업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별 - 단위학교 원격-대면 연계 수업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원격-대면 연계 수업 모델 제공을 및 권역별 실습형 교원 연수 운영
--

○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의 교육과정, 수업 전문성의 방향은 대면-원격수업 병행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하는 바, 코로나19 이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연수 및 활동 방향과 신규 사업인 원격수업지원 사업 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두 사업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면, 동 사업의 폐지 및 원격수업지원 사업과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평생진로교육국

가)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사업별 설명서 1322p)

① 개요

○ 동 사업은 22개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분산된 전자도서관 및 정보화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통합전자시스템 및 이용자용 정보화 기기의 적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073,300	1,530,950	좌동	1,542,350	좌동	
노후정보화장비교체	225,000	250,000	좌동	△25,000	좌동	◦ 무선AP인터넷사업 일부 종료 (100대→60대)
도서관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207,800	203,000	좌동	4,800	좌동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운영지원	391,200	311,500	좌동	79,700	좌동	◦ 전자책구입종수증가 (1,100종→1,600종)
자동대출반납 시스템(RFID)설치	2,249,300	766,450	좌동	1,482,850	좌동	◦ 포스트코로나 대비 고사양 스마트도서관 구입(도서적재율 증가)

-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30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설치와 자동대출반납시스템(RFID) 재구축 사업비가 14억 8천 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전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자책구입종수를 1,100종에서 1,600종으로 늘리면서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무선AP인터넷사업을 일부 종료하면서 2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자료실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로 자료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RFID 자동화 기기임.
- 교육청은 2020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중단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약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 4곳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시범 설치·운영하였음.
- 그 결과 현재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운영 중인 노원평생학습관, 남산도서관, 동작도서관, 양천도서관의 도서대출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산도서관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0.7명, 1일 평균 대출 권수는 1권에 불과하며, 그나마 4곳 중 이용자 수가 많은 양천도서관의 경우도 1일평균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가 18.6명, 22.1권에 그치고 있어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

[표62]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이용 현황

(기준일자: 2020.9.30.)

연번	설치장소	소요예산	이용자 수	대출권 수	이용 기간	1일 평균		시스템 이용 시작일
						이용자수	대출권수	
1	남산도서관	49,000	194	296	288일	0.7	1.0	2019.12.18.

연번	설치장소	소요예산	이용자 수	대출권 수	이용 기간	1일 평균		시스템 이용 시작일
						이용자수	대출권수	
2	노원평생학습관	105,582	1,774	2,150	136일	13.0	15.9	2020.5.18.
3	동작도서관	63,211	1,308	1,451	87일	15.0	16.7	2020.7.6.
4	양천도서관	108,603	2,458	2,910	132일	18.6	22.1	2020.5.22.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2019.11.22.)에서는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의 주요 설치 목적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야간 이용시간의 도서대출 실적, 지역주민의 접근성, 서울시 자치구와의 운영 중복 등을 이유로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도 당시 우려했던바와 같이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의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더욱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람·대출이 장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동 사업의 실패를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 등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그 효과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확대·축소 및 지속·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그 효과성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교육청의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부지 내에 설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 접근성 및 이용 수혜자 범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년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17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2019.11.22.)"

가)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자료실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로 자료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RFID 자동화 기기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중단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시간 단축(자료실 22:00 → 20:00)에 대비하여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의 주요 설치 목적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야간 이용(18:00~22:00) 시간대 1일 평균도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86권, 2017년 178권, 2018년 174권이며, 1일 야간 운영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당 평균 대출권수는 2016년 46권, 2017년 44권, 2018년 43권임.
- 이 중 2018년 기준 1일 평균 가장 많은 도서 대출을 하고 있는 곳은 양천도서관(282권)이며, 동작도서관(273권), 노원평생학습관(258권) 순으로 나타남.
-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실 이용 시간 내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정보자료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2018년 기준 1일 평균 도서대출 권수가 174권에 불과하며, 이를 시간당 평균으로 계산했을 경우 개관시간 연장 중단으로 단축된 2시간(20:00~22:00) 동안 대출 권수는 86권(시간당 43권)에 불과함.
- 또한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여유 공간을 활용한 독서문화 조성 및 지역주민의 도서 접근성 확대를 위해 57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도서관은 개관시간 단축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부지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도서 접근성 및 이용수혜자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설치를 위해 3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자치구와 함께 이미 설치된 57개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바,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별 설명서 1429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복지 여건을 구축하여 학업에 대한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맞춤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자립 기반을 조성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의 운영을 통한 상담, 진로, 복지 등 도움정보 제공,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복귀·진로지원·학력취득 등 학습지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표6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구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이상 출석기준 70%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연령	- 만9세~만18세 - 「청소년 기준법」의 ‘청소년’ 연령(만9세~만24세)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령인 만 19세 이상 제외
1인당 지원금액	- 최대 연 240만원 ※ 매월 분할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지원범위	-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검정고시 교제 및 관심분야 도서구입, 교육수강료 등) -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전시회, 박물관, 영화 관람 등) - 교통비와 식비
지원방법	- 초·중학교 학령기는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고등학교 학령기는 체크카드(클린카드 기능) 발급 ※ 현금인출 기능 제한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412,903	1,473,623	1,573,623	939,280	839,280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운영	325,507	705,263	좌동	△379,756	좌동	◦ 전문상담사 인건비 이관
학교밖청소년교육 참여수당	963,640	603,220	좌동	360,420	좌동	◦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운영	962,336	77,720	좌동	884,616	좌동	◦ 거점형 도움센터 구축운영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 위원회	3,320	3,320	좌동	-	좌동	
학습지원프로그램	158,100	84,100	184,100	74,000	△26,000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9억 3천 9백만원 증액된 24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이 3억 6천만원 증액되었고, 거점형 도움센터 구축·운영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운영비가 8억 8천 5백만원 증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은 2018년 264명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815명으로 지난 2년간 551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교육참여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1,911명(누적 인원)임.

[표66]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현황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9. 30. 기준)	비고
등록자	264명	574명	815명	

[표67] 20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인원

구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월 지급인원	초	16	18	21	20	20	21	30	35	36	217
	중	17	18	21	24	31	35	41	46	46	279
	고	108	136	123	128	165	175	188	189	203	1,415
	계	141	172	165	172	216	231	259	270	285	1,911
지급액	25,750	31,700	29,850	31,200	39,650	42,350	46,750	48,200	51,100	346,550	

- 2020년도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예산은 6억 3백만원이 편성되어 9월말 현재 3억 4천 7백만원이(57.6%) 집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수당의 지난 2년간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도 교육참여수당 집행률은 32.8%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금년도 9월까지의 집행률은 57.6%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하겠지만, 교육청이 서울시와 연계하여 '꿈드림'에⁶⁷⁾ 등록된 학생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확대 지급한 것이 주요 사유

67)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서울시에는 25개 센터 운영 중임(자치구별 1개 센터).

라 할 수 있음.

- 교육청은 금년 3월 “서울시와 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학업지속 지원 협력 체제를 구축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꿈드림’ 교육지원 사업 중 일부를 교육감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교육참여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음.

[표68] 2020년도 교육참여수당 대상별 지급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시교육청 “친구랑”	141	172	165	172	183	188	210	215	230	1,676
서울시 “꿈드림”	0	0	0	0	33	43	49	55	55	235
계	141	172	165	172	216	231	259	270	285	1,911

- 즉 교육참여수당은 학교밖청소년의 복지 및 학업지원을 위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교육청은 서울시와 연계하여 서울시 ‘꿈드림’에 참여하는 청소년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가 증가되면서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음.
- 따라서 교육청이 서울시와 연계하여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참여수당의 수혜 대상자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한다면, 그 재원 역시 교육청-서울시-자치구와 분담하여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69] 교육참여수당 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예산액	486,160	603,220	963,640	(금액단위: 천원)
증 감	-	117,060	360,420	

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사업별 설명자료 1570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교단위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92,480	469,880	465,980	122,600	126,500	
관계회복중점운영	-	40,000	좌동	△40,000	좌동	특교(화해분쟁지원) 사업으로 편성
또래활동중점운영	300,000	300,000	좌동	-	좌동	
사이버폭력예방 중점운영	158,000	-	좌동	158,000	좌동	특교사업 종료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 2년차 운영학교 지원 (79교) 예산 확보
언어문화개선중점운영	60,000	60,000	좌동	-	좌동	
자율적학교폭력예방 중점운영	60,000	60,000	좌동	-	좌동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지원	14,480	9,880	5,980	4,600	8,500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2천 3백만원 증액된 5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사이버 폭력예방중점운영 사업비 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계회복중점운영 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4천만원이 감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470건, 2018년 5,411건, 2019년 5,89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표70] 2017~2019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연도	학교급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금품갈취)	강요강제 적심부름	따돌림	장비통신망의 음란폭력 사이버 따돌림	기타 (성폭력 상주형 포함)	합계
2017	초	87	364	2	56	9	126	11	32	76	88	197	1,048
	중	91	1619	4	220	53	292	71	57	142	314	330	3,193
	고	43	646	3	53	10	128	11	25	33	146	131	1,229
	계	221	2629	9	329	72	546	93	114	251	548	658	5,470
2018	초	87	359	6	40	15	126	11	19	65	83	191	1,002
	중	93	1513	4	246	63	320	90	63	94	307	359	3,152
	고	58	579	5	48	18	167	15	18	36	171	142	1,257
	계	238	2451	15	334	96	613	116	100	195	561	692	5,411

연도	학교급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2019	초	516	389	37	28	72	87	169	60	1,358
	중	1,392	709	234	118	128	301	291	130	3,303
	고	530	296	35	45	49	98	141	40	1,234
	계	2,438	1,394	306	191	249	486	601	230	5,895

※ 2019학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은 변경된 2019학년도 정보공시 내용에 따라 작성됨.

※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 (금품갈취) 금품갈취, 공갈 등 / (강요) 강요, 강제심부름 등

- 그러나 학교폭력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 예산은 2018년 9억 3천 3백만원에서 2021년 5억 9천 2백만원으로 3억 4천만원(36.5%) 감소하였음.

[표71]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 예산편성 현황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어깨동무 I	160,000	35교	160,000	35교	-	-	-	-
또래활동 (어깨동무II)	480,000	240교	375,000	125교	300,000	50교	300,000	150교
어울림	232,000	120교	185,000	55교	-	-	-	-
언어문화개선	30,600	17교	90,000	30교	60,000	30교	60,000	30교
사이버폭력예방	30,600	17교	120,000	40교	192,000	90교	158,000	79교
관계회복	-	-	-	-	40,000	20교	-	-
자율적 학교폭력예방	-	-	-	-	60,000	30교	60,000	30교
예방프로그램 운영지원	-	-	-	-	9,880	-	14,480	-
합계	933,200	429교	930,000	285교	661,880	220교	592,480	289교

※ 2020년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 예산 중 사이버폭력예방 192,000천원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임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보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 예산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사업별 설명자료 1635p)

① 개요

- 동 사업은 남북교육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비한 남북교육공동체의 협력 강화와 학생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2,400	102,400	2,400	△50,000	50,000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 추진	52,400	102,400	2,400	△50,000	50,000	

-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은 남북교원학생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사제동행 체험활동, 평화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천만원 감액된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동 사업은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체험활동, 평화캠프 등을 운영하고 남북 교원 및 학생 교류와 공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남북교육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래의 남북통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사업임.
- 그러나 지난 2년간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사업 예산의 96%가 불용되고 있는바, 이는 남북관계

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남북교원학생교육교류를 위한 체험활동, 캠프 운영, 남북교원 학생 공동교육교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직접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사유라 할 것임.

[표73]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비율)	비고
2018	200,000	7,460	192,540 (96.3%)	
2019	250,000	9,526	240,474 (96.2%)	

- 따라서 교육청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요인과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직접 교류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동 사업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운용될 예정인 남북교육교류사업과⁶⁸⁾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사업별 설명자료 1650p)

① 개요

- 동 사업은 평화와 공존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통일교육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68) 주요 내용

사업명	북한체험학습추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내용	○ 교원사전답사단 파견 [1단계] ○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시범 추진 [2단계]	○ 대북교류협력 연계 ○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프로그램 운영 ○ 함께 만드는 평화, 통일 페스티벌 운영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2,400	168,600	좌동	△86,200	좌동	
교원전문성제고지원	57,000	75,000	좌동	△18,000	좌동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5,000	30,000	좌동	△25,000	좌동	
통일교육협의체운영	20,400	3,600	좌동	16,800	좌동	
통일동아리활동지원	-	60,000	좌동	△60,000	좌동	

-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 예산은 전년도 보다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 사업비의 69.1%인 5천 7백만원이 교원 대상 국외 체험 연수비로 편성됨.
- 그러나 본 예산안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특별교부금)” 사업에는⁶⁹⁾ 학교 통일교육 확대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등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대상 체험연수비가 3천 1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바,

유사한 중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원대상체험연수비를 국외 체험연수로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9)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0~1617pp

[표74]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원전문성제고 사업

세부내역	사업명	민주시민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
	교원전문성제고지원	교원대상 체험 연수: 30,500천원	교원대상 국외 체험 연수: 57,000천원

바)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763p)

① 개요

- 동 사업은 특성화고의 국제화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교육기관과의 직업교육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92,122	1,524,161	318,592	67,961	1,273,530	
특성화고국제화지원	1,592,122	1,524,161	318,592	67,961	1,273,530	

-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15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어교육(학교별 자매결연, 외국어 통번역) 보조인력 인건비 2천 2백만원, 국제화교육 운영비(홍보, 수당, 여비 등)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현장학습 외국어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지원, 해외 학생·교원초청 체류비 등 학교회계전출금 15억 2백만원이 편성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은 2018년부터 ‘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

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 기술 습득, 자발적 해외 봉사활동 참여, 해외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국제화교육지원사업 예산은 15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종식 예측이 불가함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을 축소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억 6백만원을 감액하였음.

[표75] 2020년도 국제화교육지원사업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세부내역	본예산	추경 감액	추경예산
외국어교육보조 인건비	21,641	21,641	-
운영비(홍보, 수당, 여비)	95,320	39,320	56,000
업무추진비	2,700	1,658	1,042
자치구 협력사업 대응투자액	200,000	166,619	33,381
해외학생·교원 초청·체류비	112,500	112,500	-
국제화교육지원단 활성화 워크숍	30,000	10,000	20,000
해외직업체험 사업비 지원	826,000	758,291	67,709
해외 직무외국어 교육 지원	236,000	95,540	140,460
합 계	1,524,161	1,205,569	318,592

- 그러나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금년 사업 예산을 대부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음.

[표76]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운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교수	19교	25교	35교	35교
국제화대상 국가	캐나다 외 11개국	일본 외 12개국	호주 외 15개국	16개국

-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교원의 국제화 능력 함양, 해외취업 확대, 취업진로 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특성화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동 사업 중 글로벌 현장학습은 해외 현장학습을 위해 학생의 해외 방문·체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산·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동 사업을 대체할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학교미세먼지관리(사업별 설명자료 1937p)

① 개요

- 동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하여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78,200	16,908,200	좌동	△12,830,000	좌동	
공기정화장치설치	-	14,350,011	좌동	△14,350,011	좌동	◦ 학교운영비로 편성
공기청정기유지관리비	4,075,000	2,554,989	좌동	1,520,011	좌동	◦ 사업 분리 (렌탈비와 구분하여 유지관리비 별도 편성)
학교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운영	3,200	3,200	좌동	-	좌동	

- ‘학교미세먼지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128억 3천만원이 감액된 40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렌탈비)가 학교운영비로 편성됨에 따라 143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에서 자체 구매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15억 2천만원 증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세먼지 관리 대책으로 2018년도 하반기부터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치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모든 학교에 설치가 완료되었음.

[표77]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구분	전체 실수				설치 실수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계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계
유	4,078	1,399	1,186	6,663	4,078	1,399	1,186	6,663
초	18,808	9,925	5,917	34,650	18,808	9,925	5,252	33,985
중	9,051	7,513	4,825	21,389	9,051	7,513	3,390	19,954
고	9,566	8,921	4,928	23,415	9,566	8,921	3,761	22,248
특수	618	353	320	1,291	618	353	226	1,197
각종	227	240	131	598	227	240	106	573
합계	42,348	28,351	17,307	88,006	42,348	28,351	13,921	84,620

-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 359억 2천만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렌탈비, 유지관리비)를 위해 총 184억 3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표78] 공기정화장치 예산편성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021년		
					학교운영비 (렌탈비)	유지관리비	계
예산액	7,152,550	11,866,121	16,905,000	35,923,671	14,355,952	4,075,000	18,430,952

- 이와 같이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를 위해 큰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규격 등 미세먼지 절감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⁷⁰⁾

70)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총 37일간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실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교육부에 대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36.5%가 용량 미달, 38%는 관리지침 미준수, 기계환기설비는 소음기준 미달로 사업이

- 이에 교육청은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렌탈 기간이 2021년도 말에 종료되는 만큼 현재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교육행정국

가) 사학기관운영평가(사업별 설명자료 1966p)

①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관내 전체 140개 법인 중 123개 법인을 대상⁷¹⁾으로 법인재정과 운영, 학교행정 등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항목 및 25개 평가지표를 통해 사학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13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운영평가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높이고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또한 평가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총 9개 법인에 대해서는 6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까지 우수기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중단, 렌탈사업은 입찰조건에 미달한 업체가 낙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음(감사원 감사보고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2020.9.)

71) 유치원 또는 각종학교만 경영하는 법인 10개, 재단법인 5개, 학교 미설치법인(경남학원, 청남학원) 등 17개 법인은 제외

[표79] 사학기관 운영평가 평가체계

평가영역	비중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	배점	평가기구	
I. 법인재정	30%	1.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3	13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2.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의 적정성	4	12		
II. 법인운영	40%	1. 법인이사회 운영 정확성	3	11		
		2. 법인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	3	14		
		3. 교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4	15		
III. 학교행정	35%	1.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5	22		
		2. 학교행정의 효과성	3	13		
3개 영역	100%	7개 항목	25개	100점		
가 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실시		+2		
감 점		관할청 행정처분 미이행		(-5)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		(-5)		

[표80]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내역

포상 부문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액(천원)	시상자
종합평가 우수기관(6)	종합 금상	1개 법인 × 11,000천원	11,000	교육감
	종합 은상	1개 법인 × 9,000천원	9,000	
	종합 우수상	4개 법인 × 8,000천원	32,000	
평가영역별 우수기관(3)	법인재정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법인운영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학교행정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계		9개 법인	70,000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7,140	77,140	좌동	-	좌동	
평가 우수법인 인센티브 지원	70,000	70,000	좌동	-	좌동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	7,140	7,140	좌동	-	좌동	

- 사학기관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 7백만 원을 편성되었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리고 인센티브는 2020년도 기준으로 총 123개 법인 중 7.3%에 해당하는 9개 법인에게만 차등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가장 우수한 학교법인은 최대 1천 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의 사업내용에 따른 세부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10개 법인에 7백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비 중 평가수당은 추계 단위가 15명, 업무추진비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바,

실제 인센티브지원 대상 법인수는 9개 법인이며,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구성인원은 최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추계가 계획과 달리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사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부정확한 추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
- 더욱이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은 동사업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구체적 검토와 개선을 고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지적된 사항까지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학교법인운영지도(사업별 설명자료 1970p)

① 개요

- ‘학교법인운영지도’는 학교법인 담당자의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과 함께 ① 사고법인에 대한 지원 관리, ② 사학기관 전문 자문단 운영, ③ 학교법인 운영관리, ④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및 ⑤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 대비 73.6%를 차지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학교운영’은 사립학교의 이사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공공이사로 선임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2개교 선정하고, 환경개선비(2억 5천만원, 4년간 10억원 이내)와 특색사업비(연간 5천만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4년간 운영하는 것임.
- 또한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는 사학업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의 인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140개 학교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며, ‘사고법인 지원관리’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한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42,660	130,360	71,260	712,300	771,400	
사고법인 지원 관리	160,000	40,000	좌동	120,000	좌동	○ 임시이사 파견 법인 증가(1개→4개)
사학기관 전문 자문단 운영 및 관리	9,400	11,500	좌동	△2,100	△2,100	○ 기타운영수당 감액
학교법인 운영 관리	22,560	23,960	13,160	△1,400	9,400	○ 업무추진비 감액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30,700	54,900	6,600	△24,200	24,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연수 예산 감액 ◦ 학교법인 사무직원 직무 연수 연수원 이관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620,000	-	-	620,0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운영(신규사업)

○ ‘학교법인운영지도’ 사업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천 2백만원(546%) 증액된 8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6억 2천만원 순증되었으며, ‘학교법인 지원관리’는 임시이사 파견대상 법인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억 2천만원(300%) 증액되었음.

반면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는 국외연수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전년도 대비 2억 4천만원 감액(44.1%)된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 먼저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은 사립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일부 이사를 공공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해당 사립학교에는 4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운영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임.

○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적 학교운영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힌 사립학교가 없음.

- 더욱이 ‘공영형 사립학교’의 취지와 형태가 유사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2017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추가적 선정이 없는 등 사업추진이 미진하며, 지금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재정결함보조 및 고교무상교육 등 공립학교 수준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이사를 공공이사로 운영하는 등 사업에 사립학교 법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문임.
- 또한 교육청은 동 사업 운영을 통해 앞으로 공영형 사립학교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확대한다면 그 범위는 서울시내 전체 사립학교인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이 아직까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함.
- 이처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 없이 사립학교당 연간 3억원의 예산을 4년간 지원한다는 동 사업은 자칫 전시성 운영만을 위한 예산편성에 그칠 수 있는바, 동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㉞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 동 사업은 사학업무에 대한 제도 등의 현황을 학교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TF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 동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학기관 우수직원 대상 국외연수를 위한 외부위탁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전년도 동 사업비 4천만원에서 50% 감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의 규모를 10명으로 축소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2020년도에 편성된 국외연수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제3차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되었음을 감안할 때,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10명이라는 소수인원의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효율성 측면과 필요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㉔ ‘사고법인 지원관리’

- ‘사고법인 지원관리’ 사업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비용으로,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충암학원 1곳임.

참고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광학원의 경우에는 학교법 인측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못하고 있어 임시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추가로 3개 법인에 대한 임시 이사의 선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금번 예산안에 4개 법인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그러나 사업비의 추계는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추정적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더욱이 202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8천만원→4천만원)하였는바,

동 사업 예산은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이외에 현재 임원취임 승인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소한 임시이사 선임 가능성이 있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81]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현황

연번	학교법인	진행 경과
1	충암학원	2기 임시이사 선임(2020. 8. 21. ~ 2020. 8. 22.)
2	일광학원	2020. 8. 31.자 임원 전원 승인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 집행정지 확정 후 임시이사 선임여부 결정 예정(행정소송 진행 중)

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사업별 설명자료 1982p)

① 개요

-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2021년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종전 수업료를 징수하던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 하는 것으로,

그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은 학교운영비와 장학금 지급액 및 수업료 면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됨.

- 또한 산정된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세출예산 중 ‘사학재정지원-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세부사업)에 따라 ‘교원연구비’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로 나뉘어 지급됨.

[표82]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재정결함보조금(A-B)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장학금 지급액 및 수업료 면제액 기타수요	입학금(일반고 제외) 수업료(고교 무상 수업료 포함)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기준금액 초과 포함)	연초에 총액 규모를 산정하고, 인건비는 매월교부, 운영비는 분기별 교부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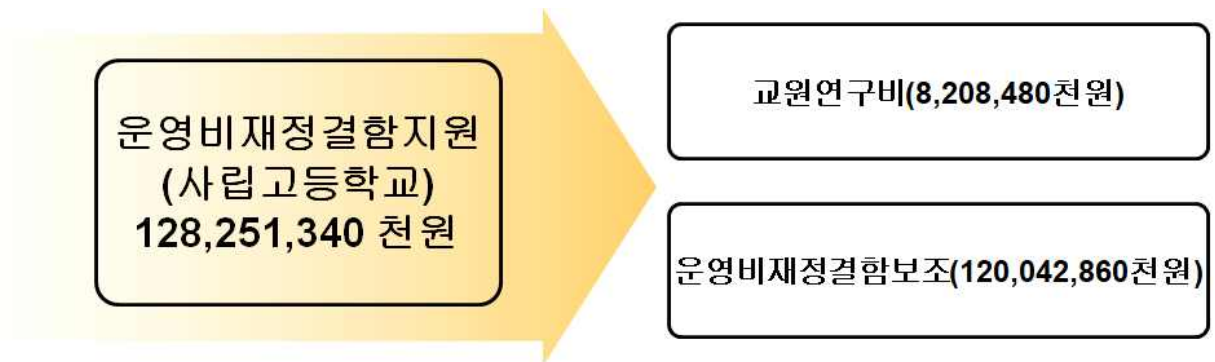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96,988,827	69,083,305	71,246,766	127,905,522	125,742,061	
사립중학교	57,690,144	57,479,985	좌동	210,159	좌동	○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립고등학교	128,251,340	-	좌동	128,251,340	좌동	○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고등학교 운영비
사립특수학교	10,872,827	11,073,320	좌동	△200,493	좌동	○ 학생수 감소 등 반영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	174,516	530,000	좌동	△355,484	좌동	○ 교체버스 물량감소
원격수업운영교사지원 (사립중,특수)	-	-	1,382,261	-	△1,382,261	
코로나19 대응지원	-	-	781,200	-	△781,200	

- 금번 예산안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업 예산은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79억 6백만원이 증액된 1,969억 8천 9백만원 (185.1%)이며, 이 중 ‘사립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특별교부금 252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1,282억 5천 1백만원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산정시 ‘학교기본운영비’는 기준재정수요액인 ‘공통운영비’와 ‘통합교부사업비’⁷²⁾를 합산한 후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중 ‘공통운영비(기본운영비)’는 학생수, 학급수, 건물 연면적, 건물연령 및 연도별 교육비 결정 함수에 의해 산정되는바,

‘공통운영비’ 산정공식을 적용할 경우 2021년도에 필요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사립고의 ‘공통운영비’ 1,213억 9백만원과 통합교부사업비 69억 4천 2백만원 등 총 1,282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예산안의 사립고에 대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운영비재정결함’ 1,282억 5천 1백만원과 ‘교원연구비’ 82억 8백만원 등 총 1,364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산정 공식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1,282억 5천 1백만원에 ‘교원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교육연구비 82억 8백만원을 이중 편성한 데 따른 것임.

72) 학교정보화기기보급, 교육지원팀소속교사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마이스터고 운영비, 교과교실제 운영비, 공기정화장치 렌탈사업비

[표83]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 중 '교원연구비' 예산안(사업별 설명자료 1979p)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832,144	3,663,568	3,541,252	8,168,576	8,290,892	
사립고등학교	8,208,480	-	좌동	8,208,480	좌동	◦ 사립고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고등학교 교 원 확대 지급

- 이와 같은 차이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중 '교원연구비' 82억 8백만 원이 중복편성된 것인바, 사립고에 대한 '운영비재정결함' 예산 중 중복편성 된 82억 8백만원은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사업별 설명서 2102p)

① 개요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 되어 온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내 햇빛발전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 주체에 따라 한전SPC형⁷³⁾과 협동조합형⁷⁴⁾으로 구분하여 4백만원과 4천만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음.

73) 한전SPC형은 한전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전과 햇빛새싹발전소(주)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 학교에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임. 서울시교육청은 한전과 2016년 12월 7일 햇빛발전소 설치 업무 협력(MOU)을 체결함.

74) 학교햇빛발전소의 유형은 협동조합형, 민간발전사업자형(일반 민간발전사업자형, 한전SPC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모두 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 유지 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형의 경우 절차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업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KW당 3만원인 반면, 한전SPC형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나 일반 민간발전사업자정보다 사업운영의 신뢰도가 높고 사용료 면에서 다른 형태보다 KW당 1만원이 높은 4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표84]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학 교		비 고
	한전 SPC형	협동조합형	
교육청	4,000	40,000	이외 타 사업 선정시 가점 및 우선 고려
업 체	7,500	-	
합 계	11,500	40,000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9,500	117,200	54,100	△7,700	55,400	
햇빛발전소설치대상 학교현장조사	3,300	4,200	2,100	△900	1,200	◦ 대상 학교수 감축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지원	104,000	24,000	12,000	80,000	92,000	◦ 사업통합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지원(협동조합형)	-	80,000	40,000	△80,000	△40,000	
햇빛발전소설치 활성화연수	2,200	9,000	-	△6,800	2,200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홍보로 대체

-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8백만원 감액된 1억 1천만원으로, 이 중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은 2020년 대비 8천만원 증액된 1억 4백만원을,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협동조합형)’은 전액 삭감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동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협동조합형은 1교당 4천만원, 그 이외의 설치형태(한전SPC)에는 1교당 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햇빛발전소 설치 신청학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중 중간에 취소하는 비율도 매우 높으며, 2020년도에는 동 사업 추진이 중단될 정도로 참여를 희망하

는 학교가 없었음.

○ 더욱이 동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해마다 30% 이상⁷⁵⁾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해마다 예산안 제출시 설치 대상학교수를 낮추어 제출하고 있음(2018년 100교, 2019년 30교, 2020년 14교, 2021년 8교).

○ 이와 같은 사업규모의 축소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예산 투입 대비 설치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 한편, 자체적으로도 햇빛 발전소의 추진이 당초 계획목표와 달리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8천만원 증액된 1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당초 ‘민간발전사업자방식’과 ‘협동조합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예산 중 ‘협동조합형’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민간발전사업자방식’을 증액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2개 유형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예산은 전년도 1억 4백만원(2천4백만원 + 8천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임.

○ 한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협동조합형은 민간발전 방식보다 10배 많은 1교당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설치 형태에 따른 운영비의 차등 지급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협동조합형’과 ‘민간발전사업자방식’에 대한 차별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례를 답습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학교햇빛발전소 설치의 효용성 문제, 인센티브성 운영비 지

75) 최근 3년간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불용률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예산현액	1,082,331	1,205,823	252,910
불용액	262,529	902,291	75,990
불용률(%)	24.3%	74.8%	30.0%

원의 효과성 문제,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 발전방식에 따른 차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족한 상황임.

- 이를 종합할 때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85] 최근 3년간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

(기준 : 2020.9., 단위 : 교)

신청연도	신청	미설치(취소)	설치진행	설치완료
2017년	52	39		13
2018년	17	8		9
2019년	18	10	3	5
총합계 (비율)	87 (100.0%)	57 (65.5%)	3 (3.4%)	27 (31.0%)

마) 노후시설개선(사업설명서 2171p)

① 개요

- ‘노후시설개선’은 학교에서 요구한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 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의 요구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거쳐 매년 공개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을 배정해 추진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19,092,247	535,704,941	546,108,138	△316,612,694	△327,015,891	
화장실개선(전면)	15,933,163	25,348,312	27,770,853	△9,415,149	△11,837,690	◦ 물량감소
화장실개선(부분)	783,034	4,769,108	4,197,411	△3,986,074	△3,414,377	◦ 물량감소
전기시설개선	11,821,089	39,260,413	36,310,637	△27,439,324	△24,489,548	◦ 물량감소
냉난방개선	11,830,393	41,374,596	43,269,838	△29,544,203	△31,439,445	◦ 물량감소
냉난방개선 (항공소음피해학교)	-	5,570,650	5,462,650	△5,570,650	△5,462,650	◦ 공항공사지원 물량감소
창호개선	13,247,012	43,549,465	46,005,900	△30,302,453	△32,758,888	◦ 물량감소
외벽개선	14,765,833	31,039,945	22,774,703	△16,274,112	△8,008,870	◦ 물량감소
소방시설개선	6,868,773	25,683,555	22,769,414	△18,814,782	△15,900,641	◦ 물량감소
방수공사	26,563,988	21,886,864	22,974,129	4,677,124	3,589,859	◦ 집중호우 피해예방
바닥개선	5,193,484	28,907,159	27,928,359	△23,713,675	△22,734,875	◦ 물량감소
도장공사	661,145	8,920,068	8,566,880	△8,258,923	△7,905,735	◦ 물량감소
외부환경개선	2,252,483	16,454,193	16,218,389	△14,201,710	△13,965,906	◦ 물량감소
기타사업	24,388,874	124,167,558	144,292,600	△99,778,684	△119,903,726	◦ 물량감소
장애인편의시설	12,012,692	21,284,774	39,535,634	△9,272,082	△27,522,942	◦ 물량감소
안전관리(내진보강)	4,800,000	22,500,000	10,245,672	△17,700,000	△5,445,672	◦ 물량감소
안전관리 (드라이비트해소)	9,121,000	8,174,000	8,050,000	947,000	1,071,000	◦ 화재안전
안전관리 (샌드위치판넬제거)	2,201,031	1,156,375	1,789,184	1,044,656	411,847	◦ 화재안전
안전관리(석면제거)	37,180,657	26,094,134	21,531,917	11,086,523	15,648,740	◦ 전년 유보사업
안전관리(정밀점검)	19,467,596	39,563,772	36,413,968	△20,096,176	△16,946,372	◦ 물량감소

- 동 예산안에 포함된 개선 사업은 화장실 개선 37건(전년도 대비 △55건), 전기시설개선 108건(△268건), 냉난방개선 50건(△109건), 창호개선 38건(△116건), 외벽개선 26건(△34건), 소방시설개선 95건(△54건), 방수공사 236건(51건), 바닥개선 22건(△76건), 도장공사 8건(△144건), 외부환경개선 22건(△149건), 기타사업 105건(△914건), 장애인편의시설 61건(△141건), 내진보강 등 5개 분야에 대

한 안전관리 364건(36건) 등 총 13개 세부분야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총 1,172건(△1865건) 2,190억 9천 2백만원(전년도 대비 3,166억 1천 3백만원 감액, △59.1%)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은 학교내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공·사립 학교들의 요구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통해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바,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학교의 필요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후인 11월 초에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통지하고⁷⁶⁾ 있어 예산편성 중복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이 중 경인고 교사방수공사(2억 9천 9백만원), 문정중 교사2동 화장실개선(2억 3천 7백만원) 등의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 사업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건의 사업비 5억 3천 6백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86]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예산 중복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항목		예산액
경인고	방수공사	교사동방수공사	299,520

76) '2020년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7319(2020.11.4.)

학교명	사업항목		예산액
문정중	화장실개선(전면)	교사2(정보화센터) 화장실개선	236,880
합계			536,400

- 한편 금번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1,865건 3,166억 1천 3백만원(59.1%) 감액된 2,190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과 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여건이 개선될 경우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그린스마트스쿨(사업별 설명자료 2164p)

① 개요

- ‘그린스마트스쿨’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와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단위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교육부는 5년 동안 18.5조원을 활용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추진 대상학교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임.
- 현재 서울시내 학교시설 전체 6,181동 중 40년 이상(1980년 이전)된 노후건물은 1,326동(21.5%)이며, 이 중 주건물이 40년 이상 경과한 810동이 우선 사업대상에 해당하며, 매년 교육지원청당 1~2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669,000	-	좌동	2,669,000	좌동	
그린스마트스쿨지원 시도교육청 분담금	559,000	-	좌동	559,000	좌동	◦ 2021년 신규사업
사전기획용역	1,760,000	-	좌동	1,760,000	좌동	◦ 2021년 신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및수수료	350,000	-	좌동	350,000	좌동	◦ 2021년 신규사업

- ‘그린스마트스쿨’은 시도교육청 분담금 5억 5천 9백만원(교육부 미래학 교추진팀-436, 2020.11.4.)과 2021년~2022년 대상학교 44교에 대한 사전기획용역 17억 6천만원 및 종전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의 개축대상학교 중 복합화로 추진되는 7개교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및 수수료 3억 5천만원 등 26억 6천 9백만원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전기획 용역’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4개교의 개축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비로서, 사전기획은 대상 선정 후 설계 용역 전(前) 단계에서 참여자 설계 및 설계발주방식 등을 검토하여 설계공모 지침 또는 과업지시 등을 기획하는 단계임.⁷⁷⁾

[그림]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단계



77) ‘2020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개선(안)’, 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 2020.5.

- 이러한 사전기획 용역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와 유사한 단계임.
- 이처럼 동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용역의 물량은 44개로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도를 반영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담당 시설과장 대상 회의에서⁷⁸⁾ 사업추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2개년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 그러나 2개년 사업대상 선정은 교육청별로 사업추진의 여건과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육부의 협조사항이었다는 점과 현재 열악한 교육재정의 여건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59.1%나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차후년도 사업대상에 대한 용역비를 사전에 미리 반영한 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바,⁷⁹⁾ ‘사전기획 용역’의 사업대상을 2개년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디자인혁신사업(사업별 설명자료 2223p)

① 개요

- ‘디자인혁신사업’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꿈을 담은 교실, 다양한 모델개발(도서관 및 특별교실 등),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디자인혁신사업(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중 꿈을 담은 교실 관련 사업은 10개 분야, 10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7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추진’ 시설과장 회의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2020.10.7

79)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예산안에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표87] 디자인혁신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69억원	178억원	218억원	277억
학교수	21교	45교	99교	105교
사업분야	[2분야] - 초등 꿈담교실 - 교무-행정실	[7분야] - 초등 꿈담교실 - 다문화 특별학급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 개방연합형교육과정 - 학교도서관 문화시설 - 소통어울림교무행정실 - 한옥형교실	[9분야] 2018년 대비 추가 - 특수학급공간혁신 - 중·고교 꿈담교실 - 기타공간개선	[10분야] 2019년 대비 추가 - 외부공간 모델개발

[표88] 2020년 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 현황

구분	구분	급별	대상공간	학교수	비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꿈을 담은 교실	초	초등 저학년 위주의 교실	20	공립 89 사립 16
	다문화 특별학급	초	다문화 특별학급	1	
	특수학급 공간혁신	전체	장애학생 교육공간	8	
	중고교 꿈담교실	중·고	중·고교 교실	8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중	공연장, 연습장	1	
	학점제형 교육과정	고	홈베이스, 교과교실 등	12	
	학교도서관 문화시설	전체	학교도서관	27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	전체	교무실, 행정실 등	9	
	기타공간개선사업	전체	기타 학교공간공간	9	
	외부공간 모델개발	전체	외부 및 전이공간	10	
소 계			10개 분야	105교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860,000	27,700,000	32,808,000	△16,840,000	△21,948,000	
꿈을 담은 교실	3,060,000	11,900,000	12,141,000	△8,840,000	△9,081,000	◦ 사업 통합축소 운영
꿈을 담은 교실 (서울시전입금)	5,800,000	3,400,000	5,767,000	2,400,000	33,000	◦ 서울시지원 지속
다양한 모델 개발	900,000	5,400,000	좌동	△4,500,000	좌동	◦ 사업 통합축소 운영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	900,000	3,600,000	좌동	△2,700,000	좌동	◦ 사업 축소 운영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200,000	2,040,000	좌동	△1,840,000	좌동	◦ 사업 통합축소 운영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서울시전입금)	-	1,360,000	3,860,000	△1,360,000	△3,860,000	◦ 사업 통합 축소 운영

○ ‘디자인 혁신사업’은 서울시전입금 58억원(전년도 대비 24억 증액)을 포함하여 총 10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168억 4천만원(△60.8%)을 감액한 것으로 사업물량을 축소함에 따른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은 2017년 도입 당시 초등학교 1,2학년이 사용하는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교육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해당 사업은 ‘디자인 혁신사업’,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 등으로 해마다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중·고로 확대하였으며, 교실 외에도 교무·행정실 및 교장실, 교사 회의실 리모델링, 한옥 교실, 외벽 도색 등 디자인에 치중한 사업으로 확대됨.

○ 그러나 현재 초등학생의 주요생활 공간인 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행정실에 대한 디자인 중심의 공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 사업의 당초 목적과 괴리가 있음.

○ 더욱이 코로나 등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노후시설 개선 등 당장 시급한 시설사업비도 전년대비 59.1%나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교무행정실에 대한 공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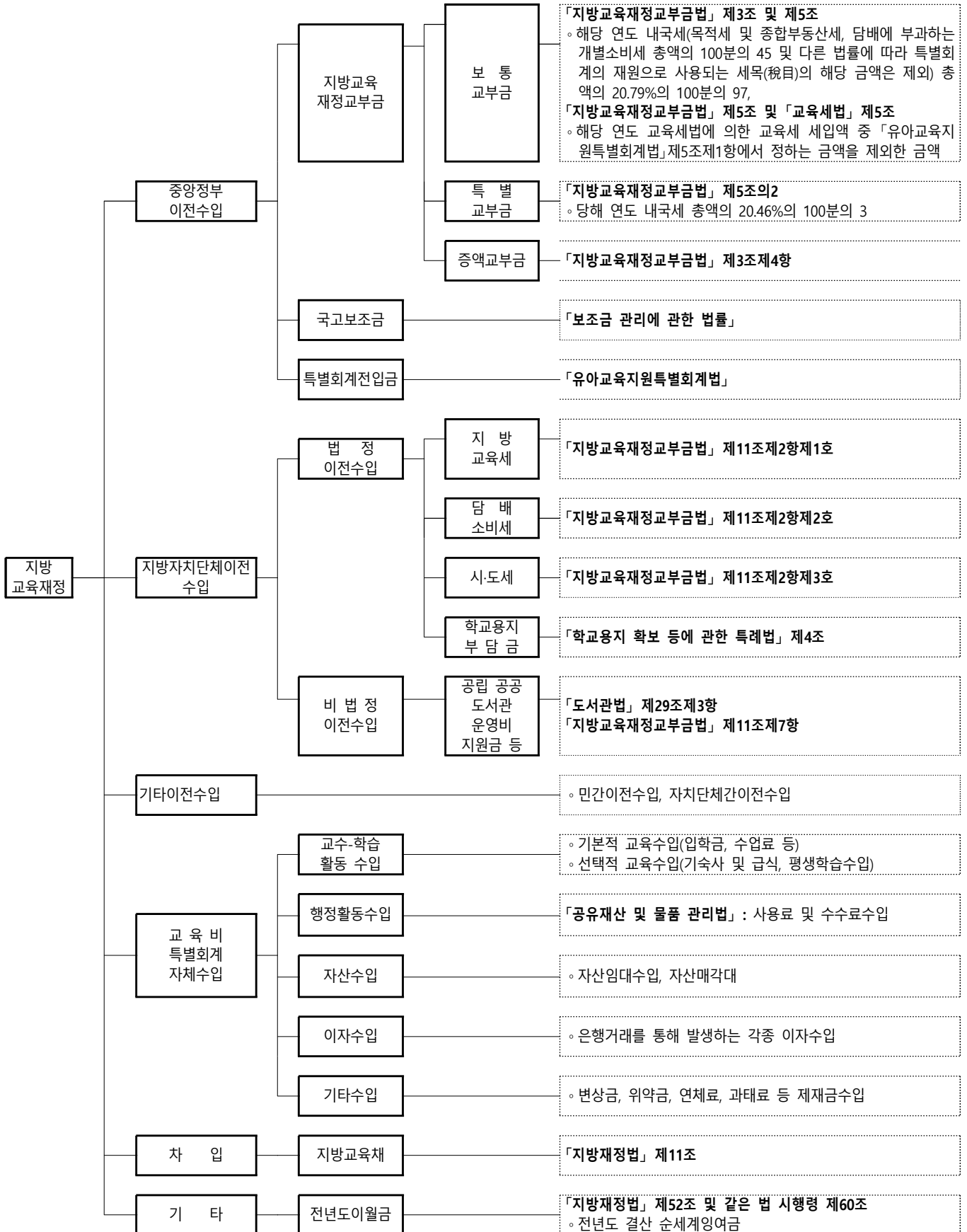
[붙임1]

2020~2021 성과목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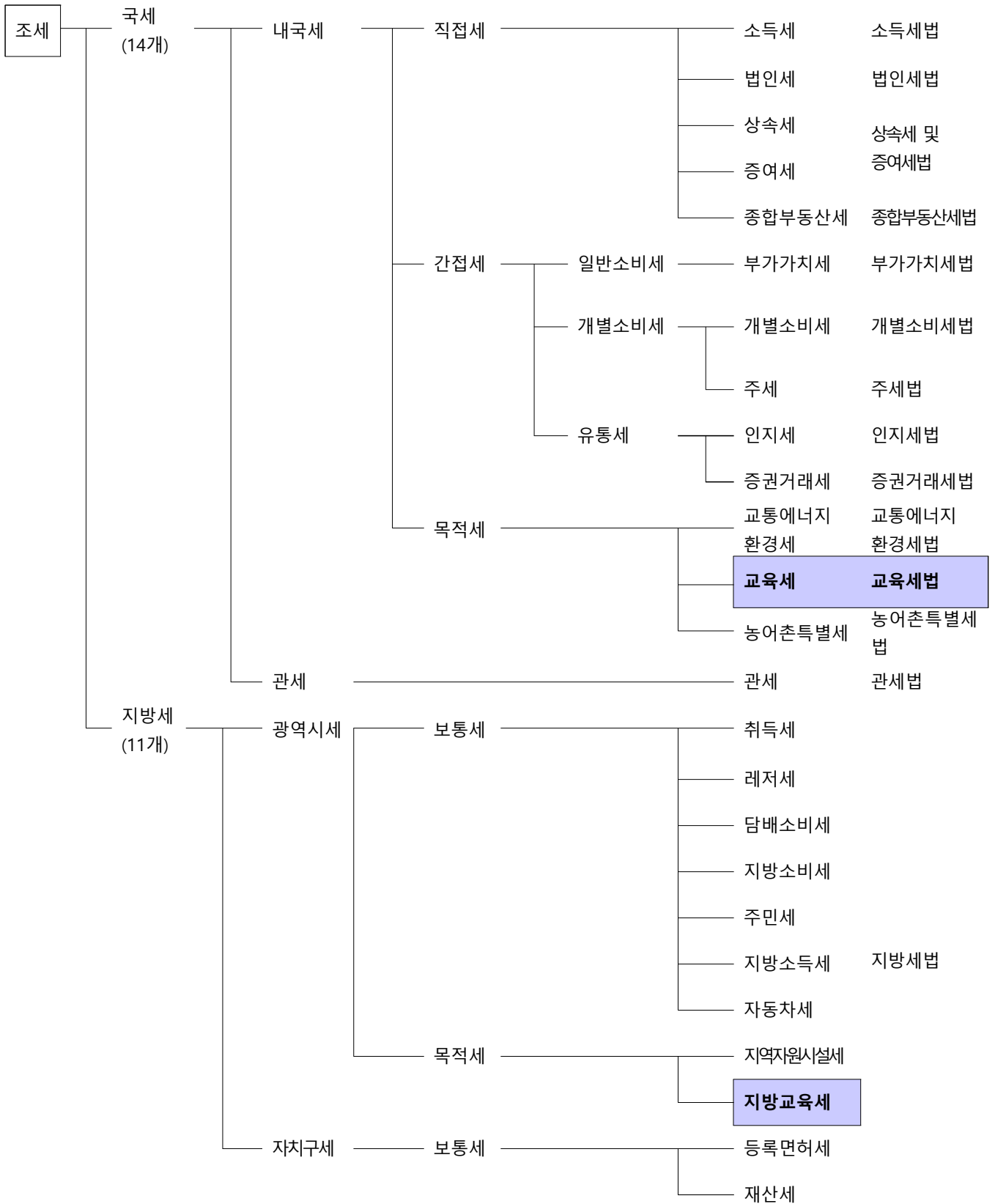
부서명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20년 목표치	변경현황
교육혁신과	자유학년제 연수실적	96%	130%	하향
유아교육과	유치원컨설팅장학 만족도	87%	76%	상향
초등교육과	초3~6학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비율	50%	30%	상향
중등교육과	일반고 교육과정정편성·운영다양화·특성화학교비율	82%	80%	상향
교육혁신과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운영	18%	17%	상향
중등교육과	수업·평가나눔교사단학습공동체	180팀	160팀	상향
초등교육과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87%	85%	상향
교육혁신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	5.63%	78%	하향
교육혁신과	과학탐구·실험수업시수비율	20%	54%	하향
교육연구정보원	정보화 전문연수 운영과정 증가율	103%	106%	하향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협력종합예술 활동 운영 성과발표회 (영상제작) 참여 비율	92%	94%	하향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예술중점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4.5점	4.3점	상향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초등 5,6학년 생존수영교육 참가인원	10,000명	8,000명	상향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88.5%	88%	상향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체험 학생 참여 비율	100%	122%	상향
진로직업교육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용률	93%	92%	상향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94.6%	94%	상향
학교지원과	일반고 진학설명회 실시	8.7%	6.6%	상향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여율	77%	75%	상향
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	82.5점	79.2점	상향
감사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7.27점	7.25점	상향
감사관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용 증가율	3%	10%	하향
평생교육과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 무원 지도감독 실시건수	685건	680건	상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지역)학습도움 센터 상담 지원률	97%	95%	상향
교육혁신과	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	1.90%	1.80%	상향
학교지원과	학급당 적정 학생수	23.5명	24명	하향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93%	96.09%	하향
유아교육과	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63%	60%	상향
중등교육과	방송통신중고 인터넷콘텐츠 활용 만족도	4.1점	4.2점	하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학생 다수재학학교 다문화언어강사 배치율	68%	66%	상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지원률	80%	35%	상향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원 역량강화	170명	230명	하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상담센터 운영	6%	7%	하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고화소 CCTV 교체비율	5%	10%	하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법률지원단 상담횟수	7,200건	7,100건	상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 교직원 1인당 인권교육 이수시간	3.7시간	3.65시간	상향
교육시설안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절차 만족도	69%	68%	상향
교육시설안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70%	80%	하향
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호 침해 대응률	63%	64%	하향
학교보건진흥원	교육대상자 설문 만족도	90.1%	94.5%	하향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기중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지원교	320교	400교	하향
교육시설안전과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달성률	86%	82%	상향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	76점	74점	상향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평가계획의 학교교육계획 포함률	89%	87%	상향
교육연수원	학교수요중심 맞춤형교육 강화율	129%	31%	상향
중등교육과	지원서비스 만족도	90%	86%	상향
총무과	전보대상자 근무희망 반영률	79%	78%	상향

부서명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20년 목표치	변경현황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 교육 만족도	91.5%	91%	상향
총무과	콜센터 운영성과 지수	94%	93%	상향
대변인	주요 매체별 공익광고 건수	117	114	상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업복귀 프로그램 참여비율	55%	60%	하향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참여수당 지급률	80%	50%	상향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사업 수혜 학생 비율	87%	86.5%	상향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	77%	76%	상향
참여협력담당관	교육청-서울시 협력사업 목표 달성률	79%	77%	상향
평생교육과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율	35.5%	42.8%	하향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만족도	53%	49%	상향
정책안전기획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률	90%	85%	상향
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자체연구과제 추진비율	110%	105%	상향
총무과	중요기록물 DB 구축률	90%	93%	하향
교육연구정보원	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93.7%	93.5%	상향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특별시 세목별 조세체계



2020년 민간전문가 활용 현황

연번	담당부서	전문가(자문관) 직위명	위촉일	총 자문횟수	자문일자	주요자문실적(내용)
1	대변인	광고홍보자문관	19.03.20	31회	1월:5회(9,17,22,23,30) 2월:2회(6,20) 3월:2회(12,19) 4월:3회(22,24,29) 5월:4회(6,14,20,27) 6월:4회(4,11,18,25) 7월:5회(2,9,16,23,31) 8월:2회(19,27) 9월:3회(10,17,24) 10월:1회(8)	-기관소식지,블로그,SNS 등온라인매체운영방향및 방식자문 -홍보물제작시착안사항 자문 -홍보효과제고방안자문 자문
2	정책.안전 기획관	정책기획자문관	19.10.14	4회	1월:1회(13) 3월:3회(4,13,24)	-교육정책사례분석및평가자문 -교육정책기획평가및연수
3	정책.안전 기획관	정책전략자문관	19.12.27	4회	3월: 4회(3, 11, 18, 24)	-서울교육정책방향설정및평가자문 -미래교육전략토론회기획및평가자문
4	정책.안전 기획관	사회적가치자문관	20.07.01	5회	7월:2회(10,24) 8월:2회(7,21) 9월:1회(23)	- 교육정책 각 분야별 사회적가치 반영을 위한 자문
5	참여협력담당관	시민협력자문관	18.10.10	33회	1월:7회(6,9,13,15,20,23,28) 2월:4회(3,6,10,17) 5월:5회(7,11,13,18,25) 6월:5회(1,8,17,22,29) 7월:5회(1,8,17,22,29) 8월:4회(3,7,13,14) 9월:3회(14,21,28)	-2020년학부모시민협력세부사업자문 -학부모지원센터활성화방안 -서울교육시민참여단운영안등 -2020.서울교육공론화사업추진 -학부모교육사업
6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자문관	20.10.12	0회	-	-
7	노사협력담당관	노동정책자문관	16.09.26	63회	1월:7회(6,9,13,15,20,23,28) 2월:7회(3,13,17,19,21,24,27) 3월:7회(2,6,12,18,23,27,30) 4월:7회(3,6,10,14,21,27,29) 5월:7회(4,11,15,22,25,28,29) 6월:7회(3,8,12,16,19,25,29) 7월:7회(3,9,15,20,24,29,30) 8월:7회(5,6,13,20,24,26,28) 9월:7회(3,10,15,17,22,24,29)	- 방과후강사, 다문화강사, 영어전문강사 등 현안 검토 - 교육공무작 조례 개정안 검토 - 코로나 19로 인한개학연기에 따른 고용 관계 검토 및 자문 방중비근무자 등에 대한 근무 대책 - 임금전국교섭과 관련된 상황 및 서울지부 교섭요구 내용 검토 - 퇴직금 변경 추진 TF 향후 진행 ,과학,교무,교행,전산 직종 상시전환 문제 등
8	교육혁신과	에듀테크자문관	18.09.05	6회	7월:1회(30) 8월:4회(6,13,20,27) 9월:1회(3)	과학교육 중장기, 정보교육 중장기, 융합교육 중장기, 영재교육 운영 관련, 과학정보융합 발전계획, 혁신미래학교 및 시용합기반 학교현장

연번	담당부서	전문가(자문관) 직위명	위촉일	총 자문횟수	자문일자	주요자문실적(내용)
						적용
9	교육혁신과	생태전환교육 자문관	20.03.01	9회	4월:1회(16) 6월:4회(1,11,18,24) 7월:3회(2,22,27) 9월:1회(23)	생태전환교육 정책 방향 및 화성화 방안, 기타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등
10	초등교육과	꿈을담은놀이터조성자문관	18.09.18	3회	4월:1회(16) 5월:2회(6,21)	-2020꿈담놀이터사업총괄자문(개선사항등검토) -사업방향정제시(자문위원대상) -사업설명회참석(학교관계자대상특강) -디자인디렉터연수참석(특강)
11	중등교육과	영어교육자문관	20.07.06	1회	10월: 1회(12)	- 외교 국제고 학교운영 관리 감독 계획 자문
12	중등교육과	독서토론교육 자문관	19.10.24	4회	5월:2회(6,19) 6월:2회(3,5)	학교도서관 방문 컨설팅(초, 중, 고)
1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자문관	19.05.21	2회	5월:1회(15) 9월:1회(14)	코로나19대응생활교육방안 -사회봉사, 특별교육의내실화방안논의
1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정책자문관	19.05.21	7회	1월:2회(10,29) 2월:3회(4,7,19) 3월:2회(18,25)	-글로벌세계시민역량측정도구개발연구최종보고평가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세계회의참가지문 -2020평화·세계시민교육기본계획추진방향자문 -세계시민윤리교육콘텐츠개발자문
15	진로직업교육과	국제교육지원 사업자문관	19.11.26	0회	-	-
16	진로직업교육과	국제교육지원 사업자문관	19.11.26	0회	-	-
17	진로직업교육과	국제교육지원 사업자문관	19.11.26	0회	-	-
18	교육시설안전과	신청사공간건축자문관	17.12.18	2회	2월:1회(17) 8월:1회(28)	-신청사 공간건축 전과정(건축, 인테리어 등)에 대한 자문
19	교육시설안전과	스마트오피스 자문관	20.06.01	2회	6월: 2회(5,26)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20	교육시설안전과	스마트오피스 자문관	20.06.01	4회	6월:2회(5,26) 8월:2회(7,12)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21	교육시설안전과	색채디자인자문관	18.03.06	3회	6월:2회(18,29) 7월:1회(22)	-『우리학교, 고운색입히기』사업디자인자문총괄 -학교별색채디자인감수 -서울교육색채환경발전디자인자문
22	교육시설안전과	서울교육공간 자문관	18.08.01	23회	1월:5회(8,15,18,22,29) 2월:3회(3,5,7) 3월:2회(11,18) 4월:3회(17,22,29) 5월:4회(6,13,20,27) 6월:4회(3,9,17,29) 7월:2회(8,29)	-2020년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사업변경심의위원회업무협의 -공공건축지원센터업무협의 -학교공간혁신관련자문 -서울시교육청디자인관리체계개선컨설팅
23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3.13	4회	7월: 4회(13, 17, 24, 27)	꿈담놀이터사업진행과정에서설계(확정전)내용검

연 번	담당부서	전문가(자문관) 직위명	위촉일	총 자문횟수	자문일자	주요자문실적(내용)
						토컨설팅, 사업취지에맞게학교관계 자와디자인디렉터간의건 조율등
24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3.13	3회	6월:2회(17,24) 7월:1회(8)	꿈담놀이터사업진행과정 에서설계(확정전)내용검 토컨설팅, 사업취지에맞게학교관계 자와디자인디렉터간의건 조율등
25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3.13	2회	6월: 2회(23, 26)	꿈담놀이터사업진행과정 에서설계(확정전)내용검 토컨설팅, 사업취지에맞게학교관계 자와디자인디렉터간의건 조율등
26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3.13	0회	-	-
27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3.13	0회	-	-
28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3.13	0회	-	-
29	초등교육과	꿈담 놀이터 자문위원	20.04.16	0회	-	-
30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3.24	2회	5월: 2회(7, 8)	1.당서초체육관,특별교 실,급식실증축검토 2.잠신중급식실및학생식 당,특별교실증축검토
31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3.24	7회	4월:1회(27) 5월:3회(1,6,28) 6월:1회(2) 7월:1회(20) 9월:1회(2)	1.장승중급식실증축및기 타공사검토 2.서울윤중초급식실및학 생식당증축공사검토 3.구일초체육관증축공사 검토 4.여의도초체육관및급식 시설증축검토 5.경인중교사동증축공사 검토 6.가양초체육관및급식시 설증축검토 7.태랑초다목적강당검체 육관증축검토
32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3.24	2회	5월: 2회(5, 7)	1.(가칭)은로유치원신설 검토 2.강서양천교육지원청통 합교육지원센터증축검토
33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5.25	0회	-	-
34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5.25	0회	-	-
35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5.25	0회	-	-
36	교육시설안	사전검토	20.05.25	0회	-	-

연 번	담당부서	전문가(자문관) 직위명	위촉일	총 자문횟수	자문일자	주요자문실적(내용)
	전과	민간전문가				
37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5.25	0회	-	-
38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5.25	0회	-	-
39	교육시설안 전과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20.05.25	0회	-	-

[붙임5]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본예산 대비 광고홍보예산 비교

(단위: 천원, %)

연번	시도	2020 광고홍보예산	2020 전체예산	예산비율	비율순위
1	세종	700,000	981,842,591	0.071	1
2	충북	1,299,686	2,879,586,766	0.045	2
3	경기	5,535,784	16,466,666,945	0.034	3
4	광주	677,000	2,238,177,730	0.030	4
5	제주	310,000	1,304,188,408	0.024	5
6	울산	412,800	1,764,632,306	0.023	6
7	전북	717,540	3,536,207,835	0.020	7
8	강원	600,000	3,301,597,352	0.018	8
9	서울	1,838,900	10,148,031,542	0.018	9
10	인천	723,000	4,202,224,679	0.017	10
11	대전	360,000	2,286,712,755	0.016	11
12	충남	320,000	3,693,866,315	0.009	12
13	전남	330,000	3,880,660,000	0.009	13
14	부산	394,400	5,004,327,809	0.008	14
15	경남	400,000	5,484,999,252	0.007	15
16	대구	168,000	3,421,228,310	0.005	16
17	경북	0	5,013,341,440	0.000	17

- 본 자료는 각 시도교육청에 유선,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여 작성한 자료임.
- 경북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소통협력담당관이 홍보업무를 맡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광고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함.

교육공무직노조 단체교섭 현황

노조명	요구일	체결일	단체협약 조항	유효기간 (갱신여부)	주요 내용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 단체협약)	2018.6.7	2020.1.31	본문 86조, 직종 27조, 부칙 10조	2022.1.30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 직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2018.4.25	2020.7.24	본문 81조 부칙 15조	2022.7.2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9 임금협약)	2019.4.4	2019.10.21. (보충협약 2019.11.30.)	직종공통 9조 (보충협약 9개 직종)	2020.8.3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 임금협약)	2020.6.5	교섭 중			□ 요구사항 -(기본급) 4% 인상 -(근속수당) 급간 40,000원(5,000원 인상)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연차별 5~13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기본급+근속의 120% -(정기상여금) 90만원→150만원 -(맞춤형복지) 공무원과 동일 지급

임금유형 1, 2 외의 교섭 요구안

직종		요구안
방과후 코디네이터		① 1주 소정노동시간 20시간 이상 ② 기본급 및 처우개선수당 타 교육공무직과 동일 지급
사감·부사감		① 단체협약 적용 ② 기본급 유형 1 ③ 계약형태가 일급제인 경우 월급제로 변경 ④ 야간취침시간을 노동시간 인정
학생 교육원	수련지도사	① 위험수당 월 5만원 ② 수련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 월 기본급의 5% ③ 교통보조금 5만원
	조리실무사	① 교통보조금 5만원
시설기동보수반		① 2018년 무기계약 전환 후 임금하락에 대한 1년 후 재협상 약속에 따라 임금하락에 따른 보전금 지급 ② 2019년 임금교섭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저하 금액을 차액보전금으로 지급 ③ 위험수당 8만원 ④ 유형1 임금체계이면서 보전금과 출장비가 있는 유형이므로, 건설노임단가 인상률이 연동된 보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확립
초등 스포츠강사		① 2020학년도 기본급을 1유형 ② 처우개선수당을 타 교육공무직과 동일 지

	급 ③ 자격수당 월 기본급의 5%
영어회화전문강사	① 무기계약 전환 ② 처우개선수당을 타 교육공무직과 동일 지급
학습준비물지원센터실무사	① 1일 소정노동시간 8시간, 주5일 근무 ② 기타 직종과 기본급(유형 2) 및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③ 근속수당 산정 시 봉사직 경력 인정
콜센터	① 처우개선수당을 타 교육공무직과 동일 지급 ②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서울교육청에서 근무했을 경우, 경력산정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경력으로 인정 ③ 감정노동수당 월 5만원
마포평생학습관 체육시설	① 자격수당 월 기본급의 5%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갱신 시 드는 교육비 및 시험 비용 보전

각종 지원단 등 조직(기구) 현황

연번	주관부서	명칭	구성인원 (명)	관련예산 (단위:천원)	주요 업무
1	정책안전기획관	공약이행소통평가단 종합평가단	17	16,990	공약사항 변경 및 조정 심의, 내부평가 결과 검토 등
2	정책안전기획관	공약이행소통평가단 시민평가단	30		공약이행 모니터링(설문평가 등), 관심분야 의견 제시 등
3	정책안전기획관	공약이행소통평가단 온라인평가단	30		모바일, 온라인 설문 참여, 공약이행 관련 의견 제시 등
4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총량제2.0)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55	12,000	학교 현장 구성원의 정책·사업 정비 의견 청취
5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총량제2.0) 서울교육정책지원청 평가단	21	6,000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 정비 의견 청취
6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총량제2.0) 서울교육정책정비실 무단	30	7,110	정책·사업 정비(안) 마련
7	참여협력담당관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학부모 459명 시민 172명	101,544	서울교육정책방향및교육감이필요에따라요청하는핵심정책과현안에대한자문및모니터링(토론회운영및정책제안)
8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학부모회 컨설팅단	학부모 54명	12,160	학부모회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실시
9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단	16	6,48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10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컨설팅지원단	28	2,4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컨설팅지원단
11	교육혁신과	학교통합지원센터운영 지원단	15	2,000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 부서 간 실무 협의 및 지원
12	교육혁신과	서울형혁신학교 정책추진 자문단	60	-	혁신학교 정책 지원 및 자문
13	교육혁신과	자유학년제 현장지원단	110	7,600	자유학년제 운영 컨설팅
14	교육혁신과	혁신미래학교지원단	21	9,500	혁신미래학교 업무 지원
15	교육혁신과	SW교육지원단	15	7,000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
16	유아교육과	유치원 꿈을 담은 놀이 교실 현장지원단	4	1,120	유치원 꿈을 담은 놀이 교실 공간 재구조화 컨설팅 및 모니터링
17	유아교육과	유치원원격수업지원 단	80	27,500	유치원 원격수업 자료 개발
18	유아교육과	유아모집·선발 관련 현장지원단	33	460	유아모집선발 업무 지원(정책안내, 현장지원, 개원지원 등)
19	초등교육과	자문단현장지원단	200	6,100	교육과정·수업·평가 교실혁신 운영활성화
20	초등교육과	원격수업 나눔터 현장 지원단	35	40,000	학년별 원격수업 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21	초등교육과	원격수업 배움터 지원단(1기)	22	예산없음	고위험군이나 기저 질환학생과 같이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22	초등교육과	초2집중학년제 지원단	103	111,500	기초학력관련운영컨설팅 기초학력보장사례공유 기초학력보장홍보 기초학력관련역량강화연수
23	평생교육과	(이모작센터)정책자 문위원회	15	8,000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요 정책 방향 논의
24	진로직업교육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지원단	15	6,000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과정 전반적 지원
25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활성화지원 단	48	4,600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연번	주관부서	명칭	구성인원 (명)	관련예산 (단위:천원)	주요 업무
26	진로직업교육과	미래교육지원단	80	-	특성화고 인공지능 분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27	진로직업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 학교컨설팅 지원단	60	3,610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학교컨설팅 지원
28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 원격수업 지원단	151	-	학교 내, 학교 간 원격수업 제작 및 수업 실행 지원
29	진로직업교육과	선도기업협의체	17	3,880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심의 선도기업인정및재인정기준심의
30	진로직업교육과	현장실습지원단	34	10,320	현장실습 사전 점검지원 현장실습운영전반에대한컨설팅및학교실무지원
31	진로직업교육과	서울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사업 지원단	86	-	국제화교육 관련 업무 지원
3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지원단	30	5,980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운영학교 및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연수 지원
3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규정제개정지원단	67	15,222	초·중·고교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운영 현황 파악 및 규정 제개정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3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법률지원단	12	992,827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 배치 운영(지역청 학교통합지원센터 11명, 본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명)
35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지원단	23	1,500	지체장애특수학교(4교)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 관리 자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36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30	5,000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사례 나눔 및 설계 노동인권교육관련콘텐츠자문및감수등
3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인권교육활성화 지원단	60	1,700	1. 교육지원청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운영지원 2. 인권교육관련교원연구동아리참여 3. 인권교육관련연수기획및지원 4. 교원대상학교인권교육(강의) 5. 인권관련수업사례나눔(교과융합, 프로젝트등) 6. 학교인권교육관련정책자문및지원
3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교육 협의체	20	10,000	평화·세계시민교육 현장 실천 지원
3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통합교육지원단	190	48,000	통합교육 관련 맞춤형 컨설팅
4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과정지원단	37	4,950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교사 지원 및 관련 자료 개발
4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원격수업지원단	60	50,000	원격수업공유플랫폼 운영 및 컨설팅, 연수지원
4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통합교육전문가협의체	51	7,050	통합교육 정책 운영 방향 협의
4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긍정적행동지원단	13	3,000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자문 및 컨설팅
4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행동중재특별지원단	26	30,000	행동중재특별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 학교생활 컨설팅 및 지원
4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원지원단	44	800	교육지원청 협력종합예술활동 우수사례 공유 지원 협력종합예술활동관련컨설팅지원
46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악기공유마당 컨설팅지원단	10	1,000	학교간 악기 공유시스템 구축 지원
47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감염병관리협의체	10	1,230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자문 등
48	학교지원과	사학기관전문가 자문단	19	11,500	학교법인(140개)·사립학교(374교) 및 사학 담당부서 업무 컨설팅 지원
49	교육시설안전과	시민참여현장점검단	18	13,120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 결과 시민참여 현장검증
5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석면모니터단	200	29,700	학교석면공사 점검 및 잔재물조사 지원
51	교육시설안전과	외부전문가참여 시설공사현장점검단	12	14,560	공사현장 서류 및 시공실태 점검
52	교육시설안전과	청사이전 협력지원단	22	300	신청사 설계한 평면 확정을 위한 과별 의견 수렴 등
53	교육시설안전과	스마트오피스 혁신추진단	11	300	추진과제 시행에 관한 논의 부서별협의조정필요한사항협의등

연 번	주관부서	명칭	구성인원 (명)	관련예산 (단위:천원)	주요 업무
54	교육시설안전과	스마트오피스 실무추진단	17	400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 및 모니터링 등
5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공간혁신추진단	16	예산없음	학교공간혁신사업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등
5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공간혁신지원단	17	예산없음	학교공간혁신추진단 운영 실무 지원
5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공간혁신 전문가지원단	12	예산없음	학교공간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